

# 북한의 헌법개정과 향후 경제정책 변화전망

전산필



통 일 부



# < 목 차 >

## 북한의 헌법개정과 향후 경제변화 전망 (요지)

I. 문제의 제기 .....	1
II. 주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헌법개정 사례 .....	3
1. 중 국 .....	3
2. 러시아 .....	9
3. 베트남 .....	12
III. 북한 개정헌법의 경제부문 내용 분석 .....	19
1. 개정 배경 및 의의 .....	19
2. 경제부문 개정 내용 및 평가 .....	20
3. 헌법개정으로 본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비교 .....	28
IV. 향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32
1. 단기 전망 (1999년) .....	32
2. 중장기 전망 .....	36

### <부록>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98.9.5 개정)
- UNDP의 북한농업회복·환경보호(AREP) 보고서



# 북한의 헌법개정과 향후 경제변화 전망 (요지)

## 1. 북한의 헌법개정 배경 및 의의

- 북한이 이번 헌법개정에서 경제관련 조항을 상당부분 개정한 것은 심화된 경제난 타개를 시도하는 한편, 이미 변화된 경제현실을 공인할 필요성에서 비롯
- 북한의 이번 헌법개정은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 2. 경제부문 주요 개정내용

### ○ 소유의 구조 및 범위 조정

- 소유주체를 구헌법에서는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국가, 사회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 (제20조~제24조)
- 생산수단 소유의 경우, 종래에는 국가와 협동단체만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사회단체에도 까지 확대 (제20조)
- 사회협동단체 소유대상의 범위를 확대 (제22조)
-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 (제24조)

o 경제의 자율성 및 재산성 중시

-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념을 ‘조국의 자주적 발전 위한 밑천’에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밑천’으로 변경 (제26조)
-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조문을 추가 (제33조)
- 경제관리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을 고려한다는 조문을 추가 (제33조)
-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종래의 「공업화」에 「현대화」를 추가·삽입 (제28조)
- 과학분야의 경우 종래에는 저작권과 발명권에 한정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특허권을 추가 (제74조)
- 종래와는 달리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 (제75조)

o 대외무역 강화 및 경제개방 확대 가능성 제시

- 사회단체, 협동단체들도 무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제36조)
- 특수경제지대에서 각종 기업의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을 추가 (제37조)

### 3.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헌법 개정 사례

< 중국 : '88년, '93년 개정 >

#### ○ 농촌의 토지사용권 확대

- 집체소유제를 농가생산량청부제(包產到戶) 및 농가경영청부제(包幹到戶)로 대체

#### ○ 시장경제와 경제입법 강화

- 계획경제체제를 벗어난 시장경제체제확립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 국영을 국유로 전환

- 국가소유경제에서 국가관리경제로 전환

< 러시아 : '88년, '90년, '93년 개정 >

#### ○ 사유재산권의 보장

- 개인적 소유 등 소유형태의 다양성 인정

#### ○ 토지의 사적재산권 보장

- 소비에트 사상 처음으로 토지의 개인소유를 허용

< 베트남 : '92년 개정 >

○ 사유재산권의 보장

- 개인소유 및 상속권의 인정 등 소유구조의 다원화

○ 사기업 및 개인경영의 승인

-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생산 및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 대외개방 확대

-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

4. 헌법개정으로 본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비교

유 사 점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현실적 모순에 의해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칙을 수정
-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확보를 통한 경제 활로를 모색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수정하여 사적 소유의 영역을 확대



## 차 이 점

- 북한의 헌법상 경제조항의 수정은 이들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시기적으로 매우 늦게 추진
  - 중국·구소련·베트남 등과 달리 북한은 경제개혁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념을 미제시
    - ※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구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 베트남은 도이모이노선 제시
  - 북한헌법에서의 경제조항 개정내용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초보수준의 부분적 조문 수정에 불과
  -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을 병행하거나 또는 수반하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정치개혁 조짐 별무

## 5. 향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가. 단기 전망 (1999년)

- 기존 계획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당면 최우선 과제인 식량난·경제난 타개에 중점
- 헌법개정('98.9.5), 새로운 최고인민회의의 구성 등 정치기반 강화를 토대로 '제한적 경제개방'을 확대 실시

- 경제특구·보세가공무역지대·관광지대 등
  -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기구 등 외부와의 경제협력 사업 적극 추진
  - 내부적으로는 잉여·부업 생산물의 거래 허용으로 사적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체제의 비효율성, 군수부문의 비대, 원부자재 및 에너지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구조적 경제침체의 탈피는 어려울 전망

## 나. 중장기 전망

### < 대내 경제부문 >

#### ○ 생산부문

- 공업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의 가동률 제고와 수익성 증대를 위해 '북한식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
- 농업부문에서는 「현대화」의 기치아래 집단농장체제의 비효율성 제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예상
- 소비재 생산활동의 일부 근로자를 계획부문에서 분리·방출하고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의 생산을 적극 장려

## ○ 소비·유통부문

- 개인의 경제활동(수공업, 자영업, 서비스업 등)과 일부 독자적 경영활동이 허용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사적 유통망을 통한 거래가 확산
- 농산물 및 생필품의 합법적인 사적 생산 확대와 계획부문에서 분리된 소비재 생산 공장·기업소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소비 생활에서 차지하는 사적 상업망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
- 국가와 중앙당국의 배급·공급제도의 축소 및 계획경제부문 밖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일부 수매를 의무화

## < 대외 경제부문 >

- 대외부문에서는 무역의 활성화 및 물류 증개를 통해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경제특구의 추가 지정 및 특구내 경제자유화 조치 대폭 확대를 통해 외화벌이 및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
- 산업시설 복구 및 가동률 제고, 경제난 완화를 위한 지원 획득 차원에서 대외경제협력의 강화와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



## I. 문제의 제기

- 북한경제는 '90년대 들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저하,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침체국면이 지속
  - '9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4.7%
  - '90년 231억달러 → '97년 117억달러로 감소
  
- 특히 최근년의 연이은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식량난으로 사회 전반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경제사회적 일탈현상이 북한 전역에 확산
  - 북한주민들은 생존차원에서 암시장 등 초보수준의 시장을 형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권 창건 50주를 맞는 금년들어 「선군 혁명사상」을 앞세우면서 민수부문보다 군수부문의 핵을 이루는 중공업부문에 역점을 두기 시작
  - 금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역·경제부문의 정치사상적 오염을 경계
  - 김정일은 경제사업 현지도시 강계트랙터공장, 2월제강공장, 2·8기계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덕성기계공장 등 주로 중공업부문 공장·기업소 방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5돌 경축 중앙보고회(4.8)시 중공업 우선정책 강조
  - 이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등 완충기 경제전략의 퇴색을 의미
- 이와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98.9.5)를 통해 구헌법의 경제분야 조항들을 대폭 수정, 채택
- 개정헌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고수하면서도 소유구조 조정, 재산성 원칙 중시 등 암묵적인 사적 경제활동을 현실화시키는데 초점
  - \* 이와 관련 북한은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9.17)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견지를 역설
- 북한의 헌법 개정은 당장 북한경제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 일단은 제한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장경제원리(경제의 합리성)를 사실상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 평가
- 따라서 북한의 헌법개정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헌법개정 경험과 비교·검토하면서 향후의 북한 경제체제 및 구조의 현실적 변화 방향을 전망할 필요성이 제기

## II. 주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헌법개정 사례

### 1. 중국

#### < 헌법개정의 경과 >

- 중국의 현행헌법('82년 헌법)은 '88년, '93년 2차에 걸쳐 개정

#### < 헌법개정의 배경 >

-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던 사영경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또는 집체경제조직이 토지경매(토지사용권에 대한 공개입찰)를 통한 자금확보라는 자본주의방식을 합법화
-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의 요체인 사영경제의 존재, 발전과 토지 임대를 토지사용권의 양도의 형식으로 인정
  - \* 이 개정을 통하여 鄧小平은 합법적으로 서방의 선진경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이른바 4개현대화(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었음.
- '88년 헌법개정은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추진

## < 개정헌법의 내용 >

### 농촌의 토지사용권 확대

- 중국은 집체소유제 경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농촌인민공사’와 ‘농업생산합작사’를 ‘家庭生産量聯動承包責任制’로 대체
  - 家庭生産量聯動承包責任制는 79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정책
    - ※ 이 청부책임제는 기본적 생산수단의 공유라는 사회주의적 원칙을 공유한 채 토지를 각 개별농가에게 분배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자체는 집단적 소유형태로 남겨두고 그 사용권만을 개별농가에게 임대하는 제도
  - 그 실시형태는 다양하지만 ‘包産到戶(農家生産量請負制)’와 ‘包幹到戶(農家經營請負制)’가 중심
  - '84년말 총농가수의 98%에 해당하는 약 1억 8천만 농가가 이 제도를 채택
    - 제8조 : “농촌안의 가정연합생산도급위주의 책임제와 생산·공급과 판매·신용·소비 등의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 집체소유제 경제이다.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유지·자유산·가정부업과 자유가축사업을 경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시장경제와 경제입법 강화 강조

○ 경제입법의 강화와 경제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경제부문 입법화의 요구성을 지적

※ 시장경제와 경제입법 강화조항은 개정헌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체제를 벗어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15조 :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조정을 완비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임의의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개정전 : “국가는 사회주의 공유제 기초 위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 균형과 시장조절의 보조작용을 통해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협조하고 보장한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경제계획을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

## 국영을 국유로 대체함으로써 政企分離 강조

○ 기존의 조항에서 국가계획지도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國營을 國有로 대체

- 이는 1992년말 중국의 국가기관 구성부분이 중국경제유형을 國有, 集體, 私營, 個體, 聯合經營, 股分制(주식제), 外商投資, 港澳臺(홍콩, 마카오, 대만)투자, 기타 경제 등의 9종류로 분류한데 따른 것임.
- o 국영경제의 국유경제로의 변환은 국가 소유경제경제에서 국가 관리경제로 전환하였음을 의미
  - 즉 경제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와 국유, 집체, 개체 등의 다양한 종류의 경영방식이 채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개혁과 경제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공
  - 全民소유제경제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구분을 실현
  - 국유기업개혁의 추진과 발전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
- ※ '92년말 중국정부가 공포한 9종의 중국경제유형 중 국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생산수단이 국가소유에 귀속하는 일종의 경제유형이고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중앙과 지방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가 국유자산의 투자를 이용하여 설립한 기업을 포함하며, 기업화경영을 실행하되 국가가 또 다시 경비지급을 허가하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인 경비지급을 허가한 사업단위와 경영성 활동에 참가하는 사회단체, 진출한 기업, 사업단위와 사회단체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포함

- \* 江澤民은 중국공산당 14대 공작보고에서 “국유소형기업중 어떤 것은 임대 혹은 판매를 통하여 집체나 개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
- 제7조 : “국영경제는 사회주의 전인민 소유제경제이며, 국민 경제의 주도적인 역량이다. 국가는 국영경제의 안녕과 발전을 보장한다.”
- 개정전 : “國有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 소유제경제이며, 국민 경제의 주도적인 역량이다. 국가는 國有경제의 안녕과 발전을 보장한다.”
- 제16조 : “국유기업은 법률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할 권리가 있다. 국유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직공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하여, 민주관리를 실행한다.”
- 개정전 : “국영기업은 국가의 통일 영도에 복종하고, 국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완성하는 전제하에, 법률 규정의 범위내에서 경영 관리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영기업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직공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 관리를 실행한다.”
- 제17조 : “집체경제조직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자주권이 있다.” “집체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실행하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원을 선거 또는 파변하며, 경영관리의 중대 문제를 결정한다.”

- 개정전 : “집체경영조직은 국가계획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 아래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 집체경제조직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민주관리를 실행하고 그것의 전체 노동자에 의해 관리 인원을 선거하거나 파면하여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 제42조 : “노동은 일체 노동능력을 가진 공민의 영광적인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도시·농촌집체경영 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반드시 국가의 주인적 태도로서 자신의 노동에 임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며, 모범노동과 선진작업자를 장려한다.”
  
- 개정전 : “노동은 일체의 노동능력을 가진 공민의 영광적인 직책이다. 국영기업과 도시·농촌 집체경제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반드시 국가의 주인적 태도로서 자신의 노동에 임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며, 모범노동과 선진작업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노동의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 2. 러시아

### < 헌법개정의 경과 >

- 구소련 붕괴를 전후하여 '88.12월, '90.3월, '93.12월 각각 헌법 개정

### < 헌법개정의 배경 >

- 구소련의 사회주의는 만성적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없었고, 명령·행정적 경제관리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
  -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의 취임과 더불어 소련의 경제개혁이 국가적인 우선순위로 추진되어 경제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조치들과 법안들이 채택
  - '90.3월 개정헌법이 사적소유권을 보장하면서부터 소련의 시장 경제개혁은 실질적으로 본격화
  - 그 이후 소유권법, 토지법, 연방기업법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됨에 따라 러시아의 시장개혁정책이 추진

## < 개정헌법의 내용 >

### 사유재산권의 보장

- '90.3월 사적소유권을 대폭 인정하는 개정헌법에 따라 소유권법  
· 토지법이 연방법령으로 제정 공포
  
- 새로운 소유권법은 소유형태를 시민적 소유, 집단적 소유, 국가적  
소유 및 합작기업의 소유 등 4가지로 규정
  - 시민적 소유내에 개인·가족경영체의 기업, 집단적 소유내의  
협동조합·주식회사 등을 인정함으로써 소유형태의 실질적  
다양성을 인정
    - ※ 소유권법제정 이전의 민법기본원칙에 따르면 소유형태는 국가적  
소유·협동적소유·개인적소유가 있었으나, 개인적소유는 규제가  
많았으며 그 허용범주도 좁았음.
  - 특히 개인적 소유는 개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통한 소득 이외에 △자영을 통한 수입, △채권 등의 유가증권  
을 통한 수입 등이 허용
  - 집단적 소유는 노동자 집단 이외에 시민이 자기의 노동 또는  
재산을 공동생산·기타의 활동을 위해 결합시킨 조직의 소유  
형태

- 제8조 제2항 :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여타 소유형태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 제35조 제1항 :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보장된다.”
- 제35조 제2항 : “모든 개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점유·처분·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제35조 제3항 :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의 강제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 제35조 제4항 : “재산상속권도 보장된다.”

### 토지의 사적재산권 보장

#### ○ 소비에트사상 처음으로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를 허용

- 이때까지 토지는 국가의 배타적 소유의 대상이었으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주체로서 국가기관, 협동조합, 기타 사회단체 이외에 개인을 추가
- 제9조 제2항 :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여타 소유형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36조 제1항 :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 제36조 제2항 :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 제36조 제3항 : “토지의 이용조건과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정한다.”

### 3. 베트남

#### < 헌법개정의 경과 >

- '46년 헌법개정 이래 '59.12월, '80.12월, '92.4월 각각 헌법을 개정
  - '80.12월 개정된 헌법은 남·북 베트남의 통일헌법이었으며
  - '92.4월 개정헌법은 '86년 도이모이(쇄신)정책을 채택, 대외 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함에 따라 경제개혁을 반영한 헌법임.

#### < 헌법개정의 배경 >

- 지난 '86년부터 본격화된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의 기본방향은
  -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통한 국민경제구조 및 투자구조의 조정
  - △소유제도의 다양화 △경제관리 메커니즘의 개혁 △국가 행정조직의 재구축 △대외경제관계의 다변화 등임.



○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의 특징으로는

- 우선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공업 육성에서 농업 및 경공업 육성으로 바꾸었다는 점
- 둘째, 수출산업의 중점적인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외자를 조달키로 한 점
- 셋째, 경제운영체계를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정부개입을 축소한 점
- 넷째, 공산당 일당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부문만을 개혁하는 체제전환이라는 점과 실험적·점진적 체제전환이라는 점 등임.

※ 도이모이 정책의 추진으로 베트남 경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  
바, 베트남 지도부는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이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장려하는  
헌법개정을 단행

## < 개정헌법의 내용 >

### 개인소유의 인정

#### o 소유구조의 다원화, 특히 개인소유 및 상속권을 인정

- 제15조 :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제도에 따라 대부분 상품경제(Open Multi-Sector Commodity Planned Economy)를 발전시킨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인민의 소유·집단의 소유·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된다”
- 제58조 : “국민은 합법적인 수입·소유재산·주택·생활자재·생산자재·영업 또는 경제조직내 기타 재산소유권을 가진다. 국가는 국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 o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경제부문으로 국영·집단경영·공사합영·자본주의적 합영·개인경영 등 5가지 형태의 생산조직이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사업과 외국과의 합작을 공식 허용

#### o 소유구조의 다원화를 인정한 헌법개정에 이어 '92년 6월에 '주식자유화'라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계획 초안을 발표

- 시험적으로 7개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各部·省 및 市에 민영화할 국영기업의 선정을 지시

- 기업노동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주고, 베트남 내국인은 총자본금의 15% 이내, 외국인은 30% 이내에서 주식매입 가능
  - 또한 국영중공업은 30%까지, 경공업과 교역 및 서비스 부문은 100%까지 사유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국영을 계속 유지
  - 국영기업의 민영화조치로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발행이 활성화됨으로써, 베트남의 대외개방정책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 또한 농업부문의 생산력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되 토지의 사용권과 상속권을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허용

※ 베트남의 농업은 전체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은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생산단위를 가계를 기초로 하는 생산단위로 재조직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는 바,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과 상속권은 농업개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제18조 : “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의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사기업 및 개인경영의 승인

o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생산 및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사기업 및 개인경영을 승인

- 제21조 : “개체경제·개인자본경제는 생산·경영조직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가계획·민생을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발전을 장려한다”

- 제57조 : “국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 자유권을 가진다”

o 사기업들의 활동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경제개혁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

- 제22조 :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 제23조 : “합법적인 개인·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수용한다. 매수·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대외개방 확대

### ○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확보를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

- 제24조 : “국가는 대외경제 활동을 총괄하고 확대하며 독립·주권과 상호 이익원칙하에서 모든 국가·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 ○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투자사업의 경우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

※ 대부분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적 불안정과 이에 따른 투자자산 보호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도 예외일 수 없음.

- 제25조 : “국가는 베트남 법률,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인 과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인 및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 '80년 구헌법과 '92년 신헌법의 경제관련 내용 비교 >

구 분	'80년 구헌법	'92년 신헌법
목 표	·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 대량생산	· 경제정책의 목표를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둔.
경제구조	· '국영경제'와 '협동조합경제'만의 경제실현 강조	· '국영경제', '집단경제', '개인자본경제' 등 4개 경제구성원의 개념을 확립함과 동시에 개인자본경제 육성을 보장
경제관점	· 국가집중관리를 강조, 경제활농, 노동의 영역 및 규모가 제한되고 대외무역과 외국과의 경제관계는 국가가 독점	·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자유와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허용
경제관리 방법	· 비사회주의 경제구성원의 개조와 계획화사업의 방법과 역할만을 강조	· 개인, 조직과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의 합법적인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고 국가관리가 있는 시장경제에 따라 여러 구성원이 참가하는 실물경제발전을 명문화하면서 법률, 계획과 정책으로서 경제를 통일 관리
토 지 소 유 권	· "토지는 전인민에게 속한다"라는 규정의 기초하에 토지사용자가 자신의 노동결과를 향유	· "토지는 전인민에게 속한다"라는 규정하에 국가가 조직이나 개인이 토지를 안정적으로 장기 사용토록 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의 사용권 이용을 허용

### Ⅲ. 북한 개정헌법의 경제부문 내용 분석

#### 1. 개정 배경 및 의의

- 북한은 '98.9.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번 헌법개정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외에 특히 경제분야 조항을 많이 수정·보충
  
- 북한이 경제관련 조항을 상당부분 개정한 것은 심화된 경제난 타개를 시도하는 한편, 이미 변화된 경제현실을 공인할 필요성에서 비롯됨.
  -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응의 일환
    - 지속된 경제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경제회생이 필수적 과제임을 인식
  - 북한내 경제활동의 변화를 공인화할 필요성
    -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적 확대 및 자유매매 현상 등의 확산은 변화된 북한의 경제현실을 반영
    - 일원적 중앙배급체계의 와해로 인해 생존차원에서 식량 조달을 위한 주민들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사실상 종래와 같은 거주 및 여행의 통제는 한계에 봉착

- 헌법개정으로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 서방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해 대외경제 개방정책 적극 추진
    -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 및 새로운 특구지대 설정 가능성
  - 경제부문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경직된 계획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
    - 「북한식 시장경제 원리」의 부분적 도입 시사

## 2. 경제부문 개정 내용 및 평가

### 가. 주요 개정 내용

#### 【소유의 구조 및 범위 조정】

- 소유주체를 구헌법에서는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국가, 사회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하였음.  
(제20조~제24조)

⇒ 기존의 소유주체에다 상사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를 추가

#### \*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용어 정의

- 사회단체 : 사회의 일정한 계급 및 계층들이 자기들의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 협동단체 : 가입한 사람들의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상품유통 등의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직

○ 생산수단 소유의 경우, 종래에는 국가와 협동단체만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사회단체에도 까지 확대 (제20조)

⇒ 사회단체에는 광명성총회사, 대성무역총상사 등 영리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및 상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

○ 사회협동단체 소유 대상의 범위를 확대 (제22조)

- 종래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협동단체는 「농기구」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헌법에서는 사회협동단체도 「농기계」 소유 가능

- 종래에는 「어선」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화물선, 여객선 등 다른 종류의 「선박」들도 소유 가능

- 개정헌법에는 종래와는 달리 부림짐승,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조문을 제외

⇒ 가축, 주택, 기타 건축물 등의 사적 소유 및 거래 허용 시사

○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 (제24조)

- 종래에는 개인소유를 「근로자」들의 소비재 소유로 제한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공민」으로 규정, 소유주체의 범위를 확대

- 종래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개정헌법은 협동농장원을 명시하지 않은 채 “터밭경리”로만 규정

⇒ 근로자·사무원들의 터밭경작 허용 가능성

- 종래와 같이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물론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로 추가 허용

⇒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 상업 등 사적 경제활동 허용 시사

#### 【경제의 자율성 및 재산성 증시】

o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념을 ‘조국의 자주적 발전 위한 밑천’에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밑천’으로 변경 (제26조)

⇒ 「자립」 개념이 정치우선적 개념에서 실리지향적 개념으로 변화

o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조문을 추가 (제33조)

⇒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 제고 시사

⇒ 종래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장, 기업소의 의사결정권이 포함된 독립채산제 실시 가능성

○ 경제관리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을 고려한다는 조문을 추가 (제33조)

⇒ 「물량」 중심의 생산에서 채산성을 고려하는 생산체계의로의 전환 가능성

○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종래의 「공업화」에 「현대화」를 추가·삽입 (제28조)

⇒ 시대에 부합하는 농업제도 개편 가능성

○ 과학분야의 경우 종래에는 저작권과 발명권에 한정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특허권을 추가 (제74조)

⇒ 개인, 사회단체 등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독점적 상품화 가능성

○ 종래와는 달리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 (제75조)

⇒ 통제된 북한사회에 지역간 주민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거래 등 사적 경제활동 활성화 가능성

## 【대외무역 강화 및 경제개방 확대 가능성 제시】

- 사회단체, 협동단체들도 무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제36조)
  - 종래에는 국가만이 수행하던 대외무역 활동을 사회협동단체 까지 확대
  
- 특수경제지대에서 각종 기업의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을 추가 (제37조)
  - ⇒ 나진·선봉 특구 이외에 남포·원산 보세가공무역지대, 신의주, 단천, 금강산 등에 경제특구 확대 설정 가능성

< 북한 개정헌법 경제분야 조문 대비표 >

조항	구분	신 헌 법	구 헌 법	비고
제20조	생산수단 소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u>사회협동단체</u> 가 소유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u>협동단체</u> 가 소유한다.	추 가
제21조	국가소유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u>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기업소, 항만</u> ,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u>중요공장의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 운수</u> 와 <u>체신기관</u> 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수 정
제22조	협동단체 소유	협동단체의 소유는 <u>해당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u> 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협동단체의 소유는 <u>협동경영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u> 이다. 토지·부립집승·농기구, 고기배, 건물같은 것과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u>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u>	수 정
제24조	개인소유	개인소유는 <u>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u> 이다. 개인소유는... <u>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u>	개인소유는 <u>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u> 이다. <u>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u>	일부 삭제 및 수정
		<u>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u>	<u>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수입에 속한다.</u>	일부 삭제 및 추가
제26조	자립적 민족경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u>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u> 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u>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u> 이다.	수 정

조항	구분	신 헌 법	구 헌 법	비고
제28조	농업의 현대화	국가는...농업을 공업화 <u>현대화</u> 하며	국가는...농업을 공업화하며	추 가
제33조	경제관리 운 용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 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인을 옹 계 이용하도록 한다.		일부 신설
제36조	대외무역 주 체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수 정
제37조	기업창설 및 운영장려	국가는...기업합영과 <u>합작</u> , 특수경제지 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u>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u> 한다.	보 충
제74조	특허권	저작권과 발명권, <u>특허권</u> 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 한다.	추 가
제75조	거주여행 의 자유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신 설

## 나. 평 가

### ○ 개정헌법 중 경제분야의 내용은

-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는 구헌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
- 대내적으로는 소유구조를 조정하고 재산성 원칙을 중시함으로써 그동안 묵인해왔던 사적 경제활동을 현실화시키거나 그 범위를 확대
- 대외적으로는 대외무역과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데 개정의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됨.

### ○ 따라서 이번 북한의 헌법개정이

- 북한경제에 당장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 북한의 경제제도와 경제현실간의 괴리현상을 어느정도 제거 시키고
- 과거보다는 실리개념이 강화된 초보적 수준의 북한식 시장원리 도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 향후 이를 토대로 한 보다 점진적인 북한경제 변화 가능성이 주목됨.

### 3. 헌법개정으로 본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비교

- 이번 북한이 개정한 헌법상 경제조항 변화와 북한보다 앞서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한 중국, 구소련, 베트남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

#### 【유 사 점】

-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현실적 모순에 의해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칙을 수정한 점
  - 중국·구소련·베트남 등은 경제회생을 위해 시장경제원리 도입
  - 북한도 경제회생을 위해 부분적으로나마 시장경제원리 도입
- 둘째,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확보를 통한 경제활로를 모색한 점
  - 중국·구소련·베트남 등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를 설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의 투자촉진을 적극 도모
  - 북한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고, 대외 경제개방을 위한 헌법적 근거와 외국인투자법을 마련하는 등 외국의 투자확대 및 유인을 위해 노력



○ 셋째,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수정한 점

- 중국·구소련·베트남 등은 국가의 소유대상범위를 축소한 반면에 단체와 개인의 소유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적 소유의 영역을 확대
- 북한도 현실적 경제구조의 변화로 전인민적 소유대상 범위 축소를 통한 사적 경제영역 확대가 불가피

【 차이점 】

○ 첫째, 북한의 헌법상 경제조항의 수정이 이들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시기적으로 매우 늦게 추진한 점

-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혁 시작
- 구소련은 1980년대 후반 본격적인 경제개혁 추진
- 베트남은 1980년 후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 초반에 경제개혁 가속화
-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변혁에 대해 부정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상당기간 견지

○ 둘째, 중국·구소련·베트남 등과 달리 북한은 경제개혁을 위한 분명한 정책이념 제시가 없는 점

- 중국·구소련·베트남 등은 경제개혁을 위해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 페레스트로이카, 도이 모이노선 등의 정책이념을 각각 제시

- 또한 중국·구소련·베트남 등은 경제개혁의 이론전개 및 제도 정비, 국민에 대한 제도, 개혁기반의 확충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국가가 주도
  - 북한은 경제난국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인정하는 차원에 국한
- 셋째, 북한헌법에서의 경제조항 개정내용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초보수준의 소극적 조문 수정에 그치고 있는 점
- 중국의 경우는 1982년·1988년·1993년 헌법개정에 의해 경제개혁의 기반 마련
  - 구소련도 1988년 헌법개정에서 경제개혁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후 1993년 러시아 연방헌법에서 적극적인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 지향의 기본원칙을 명시
  - 북한의 경우는 소유제도의 개편, 경제특구 창설 관련 조문 추가 등 소극적 수정에 불과
- 넷째,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을 병행하거나 또는 수반하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점
- 중국에서는 덩소평의 경제개혁 정책 추진과 함께 권력분산 및 당과 국가의 기본관계를 혁신

- \* 당의 활동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고, 사회주의 법질서의 확립과 법치를 강조
- 베트남에서도 ‘도이모이’ 정책추진과 함께 당과 국가의 분리라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헌법에 반영
- \*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법의 지배를 강조
- 북한은 1992년 헌법개정과 이번 헌법개정에서도 ‘당-국가체제’의 기본적 메카니즘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정치개혁의 조짐도 별무

## IV. 향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1. 단기 전망 (1999년)

#### 가. 대내 경제부문

##### < 경제제도 >

-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김일성헌법」에 맞추어 「소유제도 관련법」, 「민법」, 「기업·협동조합관련법」 등 관련 입법의 제정·개정작업을 추진 가능성

##### < 경제정책 >

- 경제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세계 시장경제체제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전망
  - ※ 「김정일헌법」의 경제조항은 사회주의 자력갱생의 원칙위에 실용적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 중장기적 차기경제계획보다는 김정일 60회생일(2002년)까지의 과도적인 경제재건 방침 내지 중점과업 설정 가능성
  - 차기 경제계획 기반 취약으로 대내경제정비 및 단기경제 계획에 치중
- '99년도 경제시책은 대외부문의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
  - 경제시책의 양대 축은 투자재원 마련과 대체시장 확보
  - 경제시책의 중점대상은 농업부문, 사회간접자본 부문(전력·통신·철도 등), 중화학 부문

## < 산업부문별 전망 >

### 농업

- 올해 곡물생산은 400만여톤 (평년작 수준)으로 '99년도 식량 총 수요량 보다 약 200만톤 부족할 것으로 평가

※ '95년이후 계속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긴급식량지원이 한계에 달하면서 '개발협력'방식으로 농업지원체제가 구성될 가능성

### 전력

- '99년에도 중소형발전소를 '우리식 전기화 방침'의 정당성 과시 차원에서 계속 건설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시설규모면에서 가정용 또는 소규모 지방공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기간 산업용 동력으로는 미흡
- '99년중 북한이 취할 방안은 석탄공급 증대와 설비개체인 바, 이는 "자체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연도중 전력생산은 전반적으로 정체상황을 보일 것임.

### 건설

- 건설이 진행중인 수력·화력발전소 평양-청진 철도 복선화, 평양-남포 고속도로의 계속 건설 및 기존발전소 기간공장들의 설비개체 추진 예상

- 남포·원산의 보세가공지역 선포·개발 가능성

### 광업

- '99년은 후우 등의 피해가 없는 경우 석탄생산의 증가로 반전될 가능성
  - '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로 현재는 더 이상 감소할 수 없는 한계적 생산상태
- 철광석 등 광물은 심부화에 따른 생산 감소와 수출부진이 예상되어 대대적인 설비투자과 시장개척이 없는 한 생산감소 추세 예상

### 경공업

- 섬유임가공은 일본 및 한국의 내수시장 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최근 2년간의 임가공 무역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내수부문은 에너지난, 원료부족 등으로 대체로 침체상태를 탈피하지 못할 것이나 일부 기초생활품 생산공장은 활기 예상

### 중화학공업

- 설비 및 전력문제 심각으로 '99년에도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난망시

## 나. 대외 경제부문

○ 대외부문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 식량 및 농업지원 확대, 국제금융기구 가입 적극 추진

○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

- 관광사업확대, 사회문화단체 방북허용, 이산가족 방북허용 등을 통해 외화획득 주력

○ 남북한간 농업부문에서의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농산물 계약재배, 수피옥수수재배 지원, 인공씨감자 지원 등 농업부문 지원·협력사업이 본격화

※ '99년 봄에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 다. 경제전망종합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의 당면 최우선 과제인 식량난·경제난 타개를 위해

- 경제특구·보세가공무역지대·관광지대의 확산 등 ‘제한적 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외부와의 경제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내부적으로는 잉여·부업 생산물의 거래 허용으로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임.
- 그러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 군수부문의 지나친 비대, 원부자재 및 에너지 부족 등 구조적·복합적 요인으로 북한 경제가 이미 자생력을 상실하고 있어
- 부분적인 개혁·개방 조치로 북한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 2. 중장기 전망

### 가. 대내 경제부문

#### 【 생산부문 】

- 공업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의 가동률 제고와 수익성 증대를 위해 ‘북한식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
- 부족한 자재와 재원을 중공업 및 선행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반면 경공업 부문에서는 축소



-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자재의 공급선, 생산품목, 판매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권 부여
- 농업부문에서는 「현대화」의 기치아래 집단농장체제의 비효율성 제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예상됨.
- 물질적 인센티브 제도의 실질적 도입과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철저 시행
  - 협동농장을 지역 또는 부락단위로 세분화하여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지역별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농업에서의 지역책임 생산제 도입
  - 그러나 가족단위(개인농) 중심의 농가책임생산제로의 이행은 당분간 시기상조로 예상
- 소비재 생산활동의 일부 근로자를 계획부문에서 분리·방출하고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서의 생산을 적극 장려함.
- 생산활동이 극히 저조하거나 채산성이 전혀 없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소규모 지방공장·기업소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하여 독자적인 생산활동을 허용하는 등 일부 생산단위를 계획부문에서 시범적으로 분리할 가능성
  - 가내 생산과 서비스는 등록을 유도하여 양성화하고, 가내 작업반과 부업반은 소규모 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
- \* 사적 경제활동 부문에 대한 세금제도 부활 가능성

## 【 소비·유통부문 】

- 개인의 경제활동(수공업, 자영업, 서비스업 등)과 일부 계획부문에서 분리 및 독자적 경영활동이 허용된 공장과 기업소가 생산한 소비재의 사적 유통망을 통한 거래가 확산됨.
  - 사적 경제활동의 유통장소인 농민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별 소규모 상설시장의 등장 등과 같은 소비재 부문의 사적 유통망이 확충
  - 사적 유통망에서 거래되는 각종 상품은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 적용
- 농산물 및 생필품의 합법적인 사적 생산 확대와 계획부문에서 분리된 소비재 생산 공장·기업소의 확산으로 주민들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사적 상업망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

소비재의 실물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시중가격 인하를 유발하는 한편,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협상가격차를 줄이는 효과
- 국가와 중앙당국의 배급·공급제도의 축소 및 계획경제부문 밖에서 생산된 소비재의 일부 수매를 의무화함.
  - 계획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현재의 배급·공급제도를 유지하여 식량, 기본생필품을 국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배급표를 제공하는 반면, 계획부문에서 분리된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와 사적 경제활동에만 의존하는 주민에게는 국가 부담의 배급을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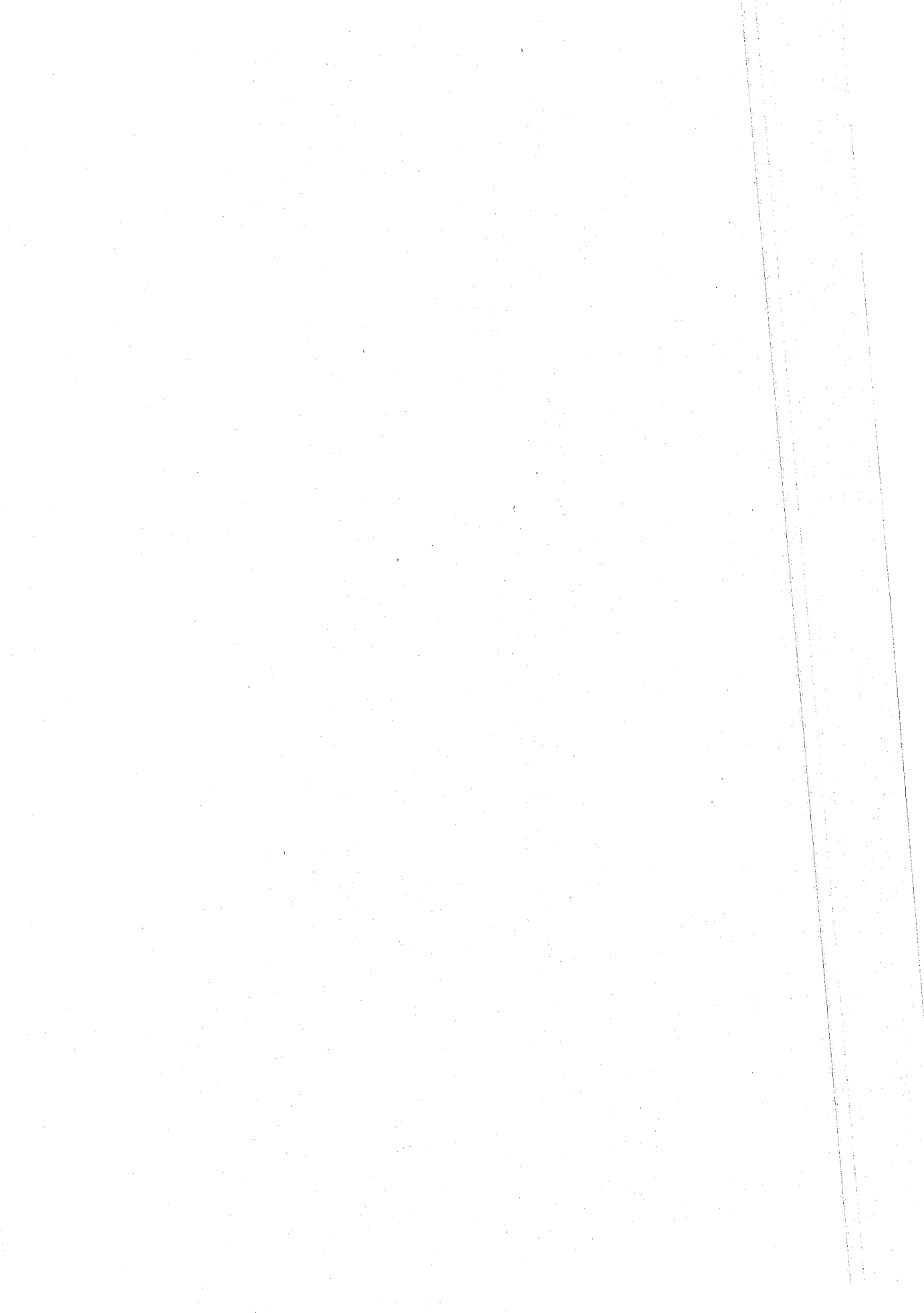
- 국영상점에서 공급하는 물자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비계획경제  
부문의 생산자가 생산한 소비재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이 구매
- 이 경우 구매가격은 국정가격보다 높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중가격제 실시
- 이중가격제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는 비계획경제 부문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시설물 사용료, 등록세,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자원 마련

## 나. 대외 경제부문

- o 대외부문에서는 무역의 활성화 및 물류 중개를 통해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단체에 대한 생산수단 소유 및 독자적 대외무역 허용으로  
조선노동당 산하 무역기관의 대외무역 활동 증대
  - 노동당 산하 무역기관들의 역할 증대에 따라 내각 산하 일부  
생산기업을 노동당으로 흡수, 대외무역을 위한 자체 생산기반  
확보
  - 이들 생산기업소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합영  
· 합작사업에도 직접 참여
  - 나진·선봉지역을 동북아 물류 중계지로 육성하여 외화벌이에  
주력

- 경제특구의 추가 지정 및 특구내 경제자유화 조치 대폭 확대를 통해 외화벌이 및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함.
  - 금강산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 나진·선봉을 포함한 두만강 유역 및 백두산·철보산 일대의 관광지 개발, 문화재 및 역사유적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외화 획득
  - 원산·남포를 수출가공구와 유사한 성격의 보세가공지대로 지정하며, 신의주·단천 등도 경제특구로 지정
  - 나진·선봉지대는 경제자유화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중계 수송기지로 특화
  
- 산업시설 복구 및 가동률 제고, 경제난 완화를 위한 지원 획득 차원에서 대외경제협력의 강화와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함.
  - 중국, 러시아와의 협조를 통해 기존 공업·광업시설 복구 및 가동률 제고
  -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및 경제지원 획득 계속
  - 외화벌이의 방편으로 한국기업 및 민간단체와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광사업 및 기타 경제협력의 확대·강화를 모색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1998.9.5)



##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가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 제 1 장 정치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의를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의를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 1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1 2 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 1 3 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 1 4 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 1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제 1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 1 7 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 1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제 2 장 경제

제 1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 2 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 2 1 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 2 2 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 2 3 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 2 4 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2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 2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 7 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 2 8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 2 9 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 3 0 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 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 3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 6 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 3 2 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3 3 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 3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 3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 3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 3 7 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동을 장려한다.

제 3 8 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 3 장 문화

제 3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4 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 4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 4 2 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 4 3 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철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 4 4 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 4 5 조 국가는 1 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 1 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주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 4 6 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 4 7 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 4 8 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 4 9 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 5 0 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 5 1 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5 2 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 5 3 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 5 4 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 5 5 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5 6 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5 7 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제 4 장 국방

제 5 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 5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 6 0 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 6 1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 5 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 6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 6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 6 4 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 6 5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6 6 조 1 7 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6 7 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6 8 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 6 9 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 7 0 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 7 1 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 2 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 3 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 4 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7 5 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 7 6 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7 7 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 7 8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 9 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 8 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 8 1 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 8 2 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 8 3 조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률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8 4 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 8 5 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 8 6 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제 6 장 국가기구

### 제 1 절 최고인민회의

제 8 7 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8 8 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 8 9 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9 0 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 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9 1 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분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분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 1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 9 2 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 ~ 2 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 9 3 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9 4 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 9 5 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 9 6 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 1 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9 7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 9 8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 9 9 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 1 0 0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 1 0 1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 1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 1 0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 1 0 3 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 0 4 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 1 0 5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 3 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1 0 6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1 0 7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 0 8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 1 0 9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 1 0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결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 0. 내각 위원회, 성을 나오거나 없앤다.

1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 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 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 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 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 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 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나오거나 고친다.

제 1 1 1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1 1 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 1 1 3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 1 4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 1 5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 1 6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제 4 절 내각

제 1 1 7 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 1 1 8 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 1 1 9 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20 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 121 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 122 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23 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24 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25 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26 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 127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 1 2 8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 1 2 9 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 3 0 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 5 절 지방인민회의

제 1 3 1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 3 2 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1 3 3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1 3 4 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 3 5 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 년에 1 ~ 2 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 3 6 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1 3 7 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 1 3 8 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제 6 절 지방인민위원회

제 1 3 9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 1 4 0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 4 1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 1 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1 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 1 4 2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 1 4 3 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 4 4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 4 5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선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1 4 6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 제 7 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 1 4 7 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 1 4 8 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 4 9 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 5 0 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 1 5 1 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 1 5 2 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 5 3 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 1 5 4 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 5 5 조 특별재판소의 소장파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 5 6 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 1 5 7 조 재판은 판사 1 명과 인민참심원 2 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 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 1 5 8 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 1 5 9 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 1 6 0 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1 6 1 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 1 6 2 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제 7 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 1 6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 1 6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 의 비는 1 대 2 이다.

제 1 6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 1 6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UNDP의 북한농업회복 · 환경보호 (AREP) 보고서

이 자료는 UNDP 주관으로 1998. 5.28-29 기간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AREP (Thematic Round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회의 보고서를 내부 참고용으로 번역 · 정리한 것임





## < 목 차 >

I. 1990년 이후 북한농업실태 .....	70
가. 농업환경 .....	70
(1) 자연자원 .....	70
(2) 사회·정치적 상황 .....	72
(3) 경제적 상황 .....	76
나. 농업경영 .....	79
(1) 협동농장 .....	79
(2) 곡물생산 .....	82
(3) 채소 및 기타 작물 .....	84
(4) 목축 및 가금 .....	84
(5) 산림 .....	85
다. 농업지원 .....	86
(1) 영농자재와 장비의 생산 .....	86
(2) 영농자재 및 장비의 분배 .....	88
(3) 협동농장 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의 판매 .....	89
(4)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 .....	92
(5) 농업연구 및 교육 .....	93
II. 1998-2000 AREP실행계획(Action Plan) .....	94
가. AREP의 목적 .....	94
(1) 식량생산의 회복 .....	95
(2) 환경친화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창조 .....	96

나. AREP의 전략과 수단 .....	97
(1) 생산능력의 재건과 현대화 .....	98
(2)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품종 다양화 .....	101
(3) 농촌의 제도적 기반강화 .....	103
다. 소요자금 .....	105
라. 원탁회의 이후 후속활동 .....	106

## 〈 표 목 차 〉

〈표 1〉 쌀과 옥수수의 비료수요와 비용(1999~2000년) .....	101
〈표 2〉 자금지원 시기와 규모 .....	105
〈부표 A〉 월별 강우량(1995~97) .....	107
〈부표 B〉 도별,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1997년) .....	108
〈부표 C〉 1995년 홍수피해 경지면적과 피해량 .....	109
〈부표 D〉 1996년 홍수피해 경지면적과 피해량 .....	110
〈부표 E〉 성별, 지역별 인구 (1993년도) .....	111
〈부표 F〉 중국의 1인당 곡물소비 .....	112
〈부표 G〉 1990년이후의 인간개발지수(HDI) .....	113
〈부표 H〉 노동력과 경제활동인구 .....	115
〈부표 I〉 경제부문별 취업인구 .....	115
〈부표 J〉 협동농장 농민 수 .....	116
〈부표 K〉 국내총생산(GDP) 1992~1996년 .....	116
〈부표 L〉 토지등급별 쌀과 옥수수의 최적생산 .....	116
〈부표 M〉 지역별 쌀 생산 .....	117
〈부표 N〉 지역별 옥수수 생산 .....	118
〈부표 O〉 1997년말 현재 식량재고 .....	119
〈부표 P〉 1998~2000년의 곡물수급(양곡연도 기준) .....	121
〈부표 Q〉 AREP의 자금소요 추정(1998~2000년) .....	122

## 〈요 약〉

- i. 1994년이후 전례 없는 흉수와 가뭄은 북한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주민의 생활을 위협함으로써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하게 하였다. 해외지원단체가 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심각한 기근과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의 과제는 앞으로 가까운 기간 내에 식량생산을 회복해 연간 약 4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으로 북한주민의 1/3에 혜택을 주고 있는 식량지원을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 ii.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와의 우호관계의 상실로 경제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발생한 이상기후의 피해는 심각한 것이었다. 이때까지 북한은 주체사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남녀평등, 수명, 교육 등에서 상당하고 광범한 혜택을 누려 왔다. 그러나 GDP는 4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50%가 축소되었고 농업생산도 7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iii. 일반경제, 특히 농업부문을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하도록 하려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정부는 농업회복과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를 위한 제1차 주제별 원탁회의의 준비와 구성을 UNDP에 요구하여 왔다.



- iv. 원탁회의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 외에도, (a)점차적으로 곡물 생산을 회복해 2000년까지 620만 톤을 생산하고, (b)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에 있다.
- v. 이러한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농업에서 (a)생산기반의 복구와 현대화, (b)토지이용률의 제고와 수확품종의 다양화, (c)농촌조직, 특히 협동농장과 농업유통망의 강화, (d)부업생산과 농민소득의 증가, (e)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 추진될 것이다.
- vi. 이 프로그램의 총비용은 약 20억달러로 추정되며 1998~2000년까지의 개발자금으로 3억달러가 필요하다. 이러한 외부지원자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쓰여질 것이다.

하부구조 재건과 농지 복구(9,300만달러)

두 개의 비료공장 현대화 및 운영비용(9,300만달러)

이모작 확대(9,900만달러)

산림복화(500만달러)와 생산능력 확대(capacity building, 1,000만달러)

- vii. AREP 실행계획은 기존의 하부구조와 생산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경제·사회적 이익이 높다. 이 프로그램은 3년동안 “근로조건부 식량지원”(Food-For-Work)에 한정되기 때문에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은 지원식량의 배급을 점차 축소시켜 나갈 수 있다.

## < 서 론 >

1. 북한정부는 북한농업의 회복과 환경보호에 대한 제1차 원탁회의의 준비와 구성을 유엔개발계획(UNDP)에 요청하였다. 공식요청서는 1997년 12월 31일 UNDP 평양대표부에 제출되었다
2. 공식요청서를 받자 UNDP는 FAO의 협조로 평양주재 지역사무국을 보강하기 위해 UN기구 소속의 경제학자와 농경제학자들을 소집하였다. 이때 제1차 원탁회의의 주제는 “농업회복과 환경보호(AREP)”로 북한정부와 합의하였다. 원탁회의의 기본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유:** 특히 1994년의 폭우, 1995년과 1996년의 흉수, 그리고 1997년의 가뭄 등에 따른 식량생산 감소의 규모 및 원인 파악

**AREP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도출:**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립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주체사상 이념에 맞추어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과 협동농장의 자생력을 회복

3. 정보공유와 관련된 이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1990년 이후 북한농업의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한다. 농업환경 부분에서는 농업의 자연자원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검토하며, 농업경영 부분에서는 농업활동의 주요분야와 협동농장의 역할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지원 부분에서는 투입물의 생산과 분배, 판매, 농촌금융, 그리고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수록된 통계와 정보의 확대를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 사회적 통계가 '국가기밀'로 간주된다는 북한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 보고서의 제2장은 1998-2000년까지의 실행계획 제안서이다. 제안된 실행계획의 수행에는 국내 및 해외자금이 소요된다. 앞으로 2~3년의 기간동안 국내식량 생산을 회복해 농업자급을 이루고 2000년까지 외부식량지원을 끝내기 위해서는 약 3억달러의 외부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 I. 1990년 이후 북한농업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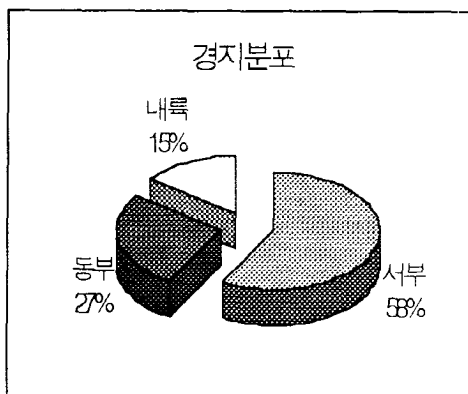
### 가. 농업환경

5. 먼저 이 절에서는 북한농업의 자연환경을 조사한 후 농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하며 인구, 생활수준, 행정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자립경제의 의미, 구소련 및 전통적인 무역상대국과의 경제관계 상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문제들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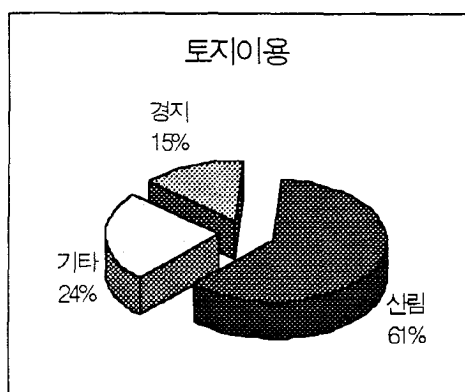
#### (1) 자연자원

6. 북한은 경작지보다 산지가 많은 나라이다. 성장에 필요한 기간은 짧고 유상기간은 5~9개월에 달한다. 여름 평균기온은 28도에 불과하며 이 기간동안 증발도는 높다. 정상적인 경우 연간 강우량은 800mm에서 1,100mm사이로 적절한 수준이지만 7~8월에 폭우가 집중된다(부표 A 참조).
7. 총면적 1,230만ha중 약 15%인 190만ha만이 현재 경작지로 분류되고

있다(그림 1, 그림 2, 부표 B 참조). 곡물생산은 비교적 평야지대인 서부의 4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부지역의 농사는 일부 평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북쪽의 고지대와 중앙내륙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목축과 밭농사가 오히려 중요성을 갖는다.



〈그림 1〉



〈그림 2〉

8. 제한된 경지면적과 식량자급이라는 국가목표 때문에 농업은 집약적이며 환경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운작은 거의 불가능하며 목초지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9. 산림이 국토의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산림이 최소한 한번

이상 벌목된 적이 있다. 최초성장수의 일부만이 깊은 산에 남아 있다. 벌목후의 임지는 거의 방치되고 있으며 120만ha에만 주로 외국산 수종의 식수가 이루어져 왔다. 곡물재배를 위해 경사지가 벌목되어온 까닭에 홍수후 완충산림지역의 황폐화가 일어났다.

10. 북한에는 여러 천연자원이 있다. 코크스용 등급에는 미달하지만 석탄은 풍부하다. 이밖에도 철광석, 납, 아연, 텅스텐, 운모와 형석, 수은, 인산염, 자철광, 금과 은이 생산된다. 그러나 석유 및 석유제품들은 모두 수입된다. 수력과 화력발전은 총 발전능력의 각각 약 50%씩을 차지하고 있다. 발전 및 송전시설은 수요증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전력

공급은 여러해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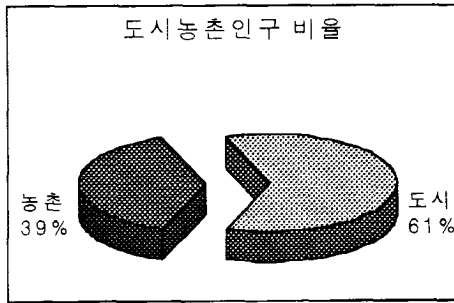
11. 최근의 홍수는 자연자원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홍수는 저지대의 작물과 산림을 황폐화시켰고 제방 및 언덕을 붕괴시켰으며 과거 비옥했던 땅에는 수톤에 달하는 모래와 돌이 쌓여 있다. 최근의 기후 변화의 심각성은 주목할만 하다. 1995년과 1996년의 홍수는 그 강도와 영향력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농사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부표 C, 부표 D 참조) 외에도 저수지, 하천구조물, 제방시설, 배수시설 등이 파괴되었다. 철도, 도로, 교량은 물론 병원, 학교 등 농촌의 하부구조가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일부 저지대가 범람해 돌과 침적토가 1m이상 쌓였다. 흥남비료공장에 비료원료를 제공하는 광산을 포함해 많은 탄광이 침수되었다. 전력생산과 송전시설도 피해를 보아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던 전력공급을 더욱 감소시켰다. 이러한 전력부족은 산업용, 수송용, 주택용 전력수요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비료생산을 감소시키고, 홍수후 물빼기작업에도 제약이 되었다.
12. 이상기후는 홍수후에도 계속되었다. 지난해 여름의 해일은 서해안 개간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동시에 전례 없던 한발은 물공급을 감소시켜 전력생산과 관계에 필요한 저수량을 위험수위까지 낮추었다. 지난 겨울의 적설량도 적어 저수지에 보충할 물이 거의 없는 상태다. 1998년에 필요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

## (2) 사회·정치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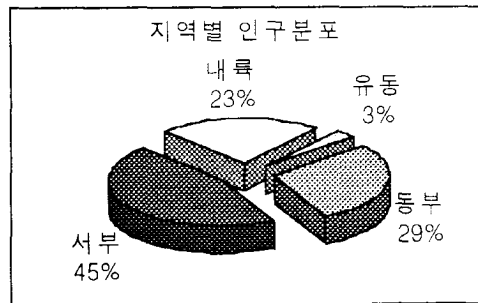
13. 북한은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의 자위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주체사상을 발전시켜 왔다. 정부기관, 기업소, 농민의 작업반(work team)은 모든 활동의 계획과 실행에서 주체방식을 따라야 한다. 김일성 주석이 이 사상을 구체화시켰고 김정일 지도하에

서도 북한은 이 사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14. 1993년 인구센서스에 따른 공식추계에 의하면(그림 3, 그림 4, 부표 E 참조) 1998년 북한의 연앙인구는 2,210만명이며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약 61%가 도시에 거주한다. 나머지 약 900만 정도가 농촌지역에 있으며 이중 약 260만명이 협동농장원이다. 협동농장원 이외의 대부분의 농촌주민들은 국영농장, 산림, 어로작업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광산지역에 거주한다.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상당히 지



〈그림 3〉



〈그림 4〉

체되고 있다. 인구증가의 급격한 감소율은 이제 북한이 1960년대와 1970년대처럼 노동력에 의지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을 해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5. 인구는 기초곡물 소비필요량을 결정한다. 북한정부와 FAO, UNDP 작업팀은 북한의 농업생산과 소비필요량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기초분석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곡물수요추정치 기준을 세웠다. 이는 두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 과정은 합리적인 곡물소비필요량을 추정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위해 이웃국가 특히 북한과 기준섭취량이 비슷한 개혁후 중국의 도시와 농촌 곡물소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부표 F〉에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정된 북한의 연간 곡물소비필요량은 농촌은 1인당 260kg, 도시는 208kg이었

다.

16. 두번째 과정은 북한의 도시 및 농촌인구분포별로 이러한 개별추정치를 적용해 전국소비기준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1993년 1인당 평균소비필요량은 229kg(조곡기준), 정곡기준으로 165kg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치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 북한에서 분배되었다고 보고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평균 식용곡물소비량은 도시화경향으로 점차 감소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1993년 이전의 곡물소요량(조곡기준)은 5백만톤 이하였다. 종자, 사료, 공업용에 사용되는 곡물소비량을 고려해도 총곡물소비량은 연 650만톤을 초과하지 않았고 북한은 이러한 소요량을 자체 생산량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17. 북한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거의 성과가 상실될 위험에 있기는 하나 사회개발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중위생과 예방의약기준은 개발도상국중 최상그룹에 속해 있었다. 병원과 진료소가 널리 산재해 있다. 평균수명은 여자 76.8세, 남자 68.4세로 선진국 수준이다. 문맹률은 낮으며 16살까지 의무교육이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농촌주민에 대한 통신 및 지역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인구센서스에서 1993년도의 기술자와 전문가의 수를 170만명으로 추계한 것을 볼 때 고등교육 기회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농민과 대부분의 노동자는 특화된 기술이나 관리훈련을 받고 있다.
18. 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상위계급에서의 비율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약 8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성취도와 평균수명에서 볼 때 북한은 비교적 낮은 1인당 GDP가 아니더라도 높은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그룹에 소속되었을 것이다(1990~97년의 HDI는 부표 G 참조). 성별을 감안하여 조정된 인간개

발지수(gender adjusted HDI)는 더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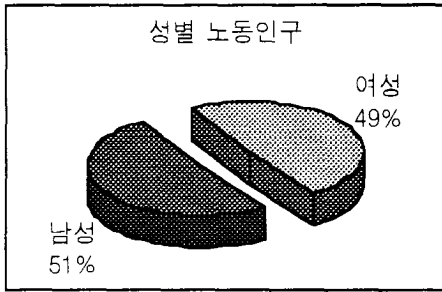
19. 사회개발 측면에서의 실적은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농촌의 복지수준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가능한 한 이를 도시생활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도 추진하였다. 협동농장에는 오래전부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주택, 수도, 병원 및 진료소, 학교, 탁아소, 휴식시설이 있었다. 이러한 시설과 함께 서비스의 상당부분은 협동농장 자체자금으로 지원된다. 즉 농업생산증가에 따른 수입으로 학교 및 병원유지, 교사 및 진료요원 임금의 일부지원, 문화, 휴양서비스에 대한 지원 등에 자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지난 4년간의 생산부족은 이러한 지원을 유지시킬 능력을 약화시켰다.
20.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노동당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하며 그 집행은 총리가 이끄는 정무원이 수행한다. 기본정책과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중앙정부는 강력한 지시와 통제수단을 강구하며, 지방정부 특히 농업관리기구단계에서는 상당한 자율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중앙정부의 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 도, 시·군 단계에 행정조직이 있다.
21. 전반적인 농업정책은 정무원 소속의 중앙정부조직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러한 조직에는 재정부, 국가계획위원회, 농업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 임업부가 있고, 도 및 시·군 단위의 관련조직이 있다.
22. 협동농장은 시·군단위의 관련조직과 함께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경제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농민의 현금수입은 비교적 적지만 재정적으로 건실한 농장에서는 농민을 위한 건강, 교육 및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생산의 회복은 농가의 소비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는 동시에 현금수입의 증가를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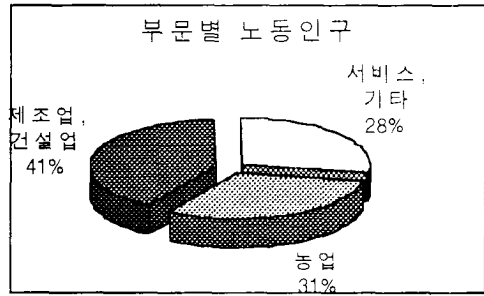
있을 것이다.

### (3) 경제적 상황

23. 북한은 주체사상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경제계획을 결합하여 공업중심의 개발도상국가로 발전하였다.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한 북한은 지난 20년동안 빠르게 산업화하였고, 농업을 현대화, 집약화하였으며, 수송 및 통신시설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대중적인 노동참여와 함께 각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는 일반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1인당 GDP는 1992년에 1,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총요소생산성은 그리 증가하지 못하였고 일부의 계획목표가 크게 미달하였다.
24. 경제는 강철, 비료 및 화학, 시멘트, 광업, 제련 등 중공업투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특히 화차, 터빈, 조선, 기계산업 중심의 중공업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산업부문의 발전은 농업발전에도 기여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비료, 농약, 중소형 트랙터, 관개펌프, 쟁기 기타 농기구분야이다. 그러나 의류와 신발을 제외하고 소비재 등의 경공업은 계획만큼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장되지 못하였다. 서비스부문 역시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소비재 및 서비스부문이 공급부족 상태에 있다.
25. 1993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인구의 31%가 농업부문에, 41%는 공업과 건설업에, 그리고 28%가 서비스 및 기타부문에 종사하고 있다(그림 5, 그림 6, 부표 H, 부표 I, J 참조). 이러한 통계는 최근에도 큰 변화 없다.



<그림 5>



<그림 6>

26. 북한경제는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와의 오랜 무역관계가 붕괴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료, 비료, 농약 등 주요 공업 및 농업 자재의 수입가격은 1991년이후 상승하였다. 동시에 산업생산과 수출소득도 무역관계의 붕괴와 특히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크게 감소하였다.

27. 1994년 이후 산업생산의 감소는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낮은 외화가득은 원유, 비료, 농약, 농업장비 수입을 어렵게 하였다. 수입원의 부족과 불안정한 전력공급 문제로 트랙터, 트럭, 양수기 등의 생산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특히 부품공급상의 문제로 기존의 장비도 제대로 가동될 수 없었다. 전력부족은 노후화된 양수시설, 용수공급과 배수시설의 악화 등으로 야기된 관개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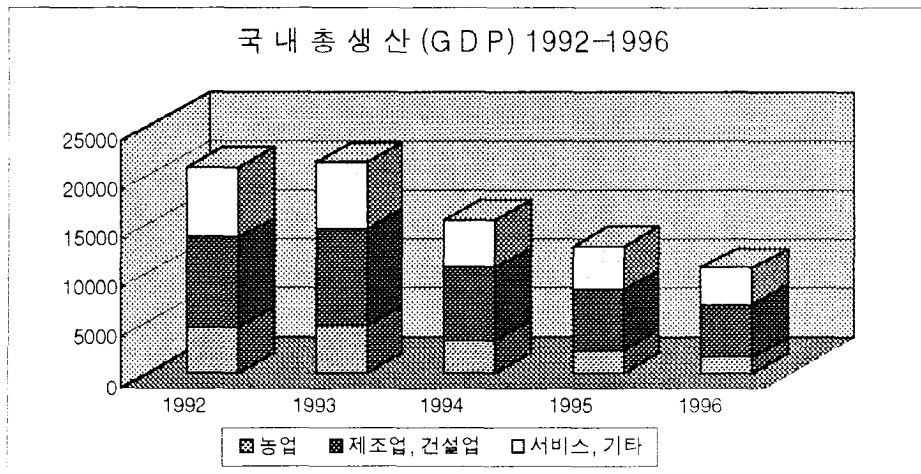
28. 1994년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전략은 우선순위로 농업에 1차 목표를 설정하고 경공업에 2차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무역과 투자의 촉진이 세번째 목표이다(공식적인 표현은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29. 북한은 기존 공장과 사회간접자본의 복구와 현대화 그리고 외국투자 및 무역의 활성화로 경제를 회복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북한은 비료 같은 농업관련 산업과 농기계생산에 대한 투자에 특히 관심을 갖

고 있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또한 경공업과 서비스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전력, 통신, 수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선행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와 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금융제도가 요구된다.

30.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투자, 송금,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의 입법화와 함께 제도 및 금융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역에 위치한 나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FETZ)를 설치하였다. UNDP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따라 이미 나진·선봉특구지역에서는 인접국가와의 교역과 수송에 필요한 자유무역항과 운송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호텔과 하부시설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도 이루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미약하지만 투자유치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도 의류제조(300여개중 200개 공장에서는 입가공형태로 생산)와 전자부품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한 외국은행은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31.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력생산, 철도와 화물수송, 통신분야는 연료 부족, 설비의 노후화, 부품부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무역과 경제개발은 경제제재로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 끝으로 1995년과 1996년의 홍수는 도로, 교량, 철도, 통신시설, 공장 등을 파괴하거나 손실을 입혔다. 탄광의 피해는 화력발전의 주된 에너지원인 석탄생산에 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 결과 1993년에 정체상태에 있었던 GDP가 1993년에서 1996년까지 50%가 감소하였다(그림 7, 부표 K 참조) 따라서 1인당 소득도 1996년에는 481달러로 떨어졌고 1997년의 경우에도 이 수준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단위: 백만달러)

## 나. 농업경영

32. 이 절에서는 북한의 농업생산문제를 검토하며 특히 협동농장의 중요성, 북한농업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를 밝힌다. 그리고 곡물생산과 농업생산의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논의하고 채소, 목축, 임업과 조림문제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 (1) 협동농장

33. 약 3,000개의 협동농장이 전체 농업생산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협동농장별 경지구모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전형적인 규모는 400~600ha이다. 협동농장에서 직접 경작하는 토지 외에 개별농가는 평균 100m<sup>2</sup> 이하의 개인토지(텃밭)를 가지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1,000여 개의 국영농장이 있는데 주로 간척지와 같이 상당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혹은 개발된 종자의 육종을 위한 단종경작, 혹은 목축 등에 전문화되어 있다.

34. 협동화과정은 5ha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의 소유권을 몰수한 토지개혁에서 시작되었다. 토지개혁에 이어 현대적인 영농방식의 도입(특히 고수확 품종과 관련), 무기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확대, 기계화의 촉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현대적인 관개시설의 구축(주로 동력에 의한 양수시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열악한 기후에 적합한 종자를 개발하고 적절한 영농방식을 연구해온 농업과학원에 의해 지원되었다.

35. 국가의 근본적인 요구인 주곡공급능력의 유지라는 과제의 달성을 위해 협동농장은 일상적인 업무처리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체적인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경우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타의 측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원칙이 협동농장의 조직 및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 공업관리이론
- 사회적, 조직적 결집력 구축 노력

36. 생산의 관점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업관리이론에 따라 자립적 협동농장이 조직, 관리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농업규모를 추정하고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트랙터와 기타 기계화된 장비를 배분하기 위해서 공업효율성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효율성목표를 사용하여 최적의 항시노동력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협동농장원수와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력사용(매우 중요한 자원임)에 대한 계수를 설정하였다. '협동농장 연간생산계획'은 중앙의 지침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투입요소와 생산목표의 정확한 추정, 엄격한 감독, 빈번한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업관리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37. 또한 협동농장의 구성 및 관리는 전통적인 농촌사회구조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농장들은 대체로 시, 군의 하위단위인 전통적인 리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작업반, 특히 작업반의 하위단위인 분조의 규모와 구성원은 옛날 농촌마을이나 공동가족 단위의 구조와 공간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구조와 공동체정신은 협동농장의 유대감과 공동체정신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현재 협동농장의 관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과 적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38. 협동농장의 토지이용과 관리상의 우선순위에는 다음과 같은 상이한 사회경제적 경향을 고려하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주체사상의 영향을 반영한 자립이다. 농장은 농장구성원의 기본식량필요량을 충족시켜야 한다(농장생산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다(3) 참조). 또한 협동농장은 지역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운영, 가게에 대한 의류와 기타소비재의 공급을 위한 충분한 현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9. 두번째 우선순위는 국가가 설정한 곡물생산과 기타 농산물의 생산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목표 즉, 자립 및 국가목표에 대한 수행이 기본토지사용계획과 연간 농장경영활동의 근간이 된다.
40. 세번째 우선순위는 협동농장 내의 사회조직의 통합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의 대부분은 단순한 것들로서, 예를 들면 학교나 사회센터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자금배분 등에 함의를 끌어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복잡한 제도적 과제는 개인별, 작업반별, 분조별로 기술적 능력이나 기본적인 소비수요를 감안하여 작업과 책임을 분담하고 그 결과물인 이익을 배분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수요는 체계화된 관리 및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족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과 분배의 문제가 정

당성 (legitimacy) 을 갖는 데에는 협동농장을 결속시키는 전통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에 의존하고 있다.

## (2) 곡물생산

41. 협동 및 국영농장의 '연간작업계획' (Annual Work Plan: AWP) 은 항상 식량자급을 달성하려는 국가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연간작업계획 작성 과정에서 곡물생산목표가 설정되고 농업자재, 기계화지원, 그리고 노동력의 필요량이 결정된다. 협동농장의 자체 수요를 초과한 생산분은 공식적인 국가수매가격으로 판매한다. 곡물과 기타 작물, 가축의 판매로 생긴 수익은 학교와 병원 운영,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협동농장의 시설관리에 사용된다. 또한 농기계의 대체와 구성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위해 적립된다. 곡물과 기타 수확물의 판매로 얻는 부수적인 수입은 개인별 기여도를 측정하는 '노력일평가제' (work point system) 에 의해 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 이러한 분배제도는 작업반과 분조에 대해서까지 적용되고 있다.
42. 과거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은 국가의 생산목표를 꾸준히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곡물생산의 목표달성은 생산이 에너지집약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히 이용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영농방법으로는 무기질 비료와 석유를 원료로 한 농약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화학화가 강조되었다. 논과 밭은 기계화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관개방식도 자연저장되는 저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에 의존하는 양수시설에 의존하였다.
43. 기본적으로 벼와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토지는 강력한 국가주도하에 경작지로 개발되었다. 또한 계속 경작지를 늘리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환경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간척지 개발과 배수시설

건설이 추진되었다.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가 많이 사용되었고,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연료 및 전력사용을 낮추기보다는 다수확품종의 개발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44.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곡물생산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발표되어 왔지만 실제 생산은 그에 미달하여 해외수입에 크게 의존하였다. 직접적인 수입을 통해서만이 비료수요가 충족되고 대부분의 농약, 트랙터와 트럭에 필요한 원유와 연료 역시 수입되었다. 또한 농업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내공업 역시 비료공장 가동을 위한 원유에서부터 강철을 생산하는 코크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원재료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45. 1980년대말 이후 벼와 옥수수 재배면적은 각각 58만ha와 60만ha로 전국경작지의 2/3에 해당된다. 모든 쌀생산은 관개가 가능한 1등급(우수)과 2등급(양호) 토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부표 L 참조). 60만ha의 옥수수 재배면적중 단지 1/3만이 관개가 가능하다. 항구적인 관개시설이 없는 2등급과 3등급 토지에서 거의 모든 옥수수가 경작된다.

46. 최적조건(양호한 기후조건과 적절한 영농자재의 공급) 하에서 벼수확량은 동쪽지역의 경우는 6톤/ha, 서쪽평야지대는 8톤/ha이며 전국적으로는 평균 7톤/ha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벼수확량은 약 70%가 감소되어 1996년의 경우 2.4톤/ha에 불과하였다. 수확량이 폭우, 홍수, 한발과 같은 극심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명백하지만 북한의 경우 기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쌀생산은 1989~93년기간의 평균 440만톤에 비해 1996년과 1997년에는 150만톤에 불과하였다(부표 M 참조).

47. 옥수수 재배면적의 25%가 관개시설이 없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옥수수 수확량은 벼수확량보다 더욱 감소하였다. 옥수수생산은 1989~93년



기간 평균 390만톤인데 반해 1996년과 1997년에는 겨우 100만톤이었다 (부표 N 참조).

### (3) 채소 및 기타 작물

48. 채소, 과일, 기타 농산물은 농가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영양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배추와 기타 주요농산물은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의 연간작업계획에 포함시켜 간작이나 이모작으로 생산하고 있다. 부차적인 채소들은 관개시설이 없는 토지나 수로와 하천지역, 농장지역의 도로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49. 채소재배는 농가의 주요 현금원이다. 협동농장원은 자체사용 목적과 부수입원으로서 소규모 가축사육과 채소재배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업용 생산물은 적어도 10일에 한번 열리는 농민시장(peasant markets)에서 판매된다. 농민시장에서의 가격은 통제를 받지 않는다. 소수인에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1인당 거래규모가 공식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 (4) 목축 및 가금

50. 닭, 돼지, 염소, 토끼는 전통적인 식용동물로서 주요 단백질공급원이다. 가축사육은 국영농장과 협동농장 소득에 상당히 기여하며 가계의 부수입원이다. 소는 일차적으로 밭갈이에 이용되며 고기와 우유생산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돼지관리는 종자개량을 담당하는 협동농장과 사육을 담당하는 농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돼지에게는 곡물, 농축사료, 음식찌꺼기 등이 제공된다. 염소는 분조와 개별농가들이 사육한다. 염소에게는 짚, 목초, 동계건초 등을 먹인다. 닭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장이나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다. 큰 가축의 사육여부는 사료의 확보

가능성에 달려 있다.

51. 1995~1996년 홍수 이전 북한은 소 90만마리, 염소 30만마리, 그리고 닭, 오리, 거위는 2,300만마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축은 홍수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소는 37%, 양과 염소는 3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곡물로 사육되는 돼지와 닭, 오리 등이 각각 57%, 90%가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동농장과 개별농가의 소득은 감소하였고 농촌의 영양부족, 도시에 대한 고기공급의 감소가 나타났다. 곧 개별농가와 협동농장이 산악지역에서 가축사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목축진흥프로젝트(IFAD)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산림

52. 임업부는 국토환경보호부의 지침과 협력하에 750만ha의 산림을 관리한다. 거의 모든 산림지대는 벌목되었다. 약 630만ha가 자연림이고 120만ha가 조림지역이다. 산림관리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복합적인 이용에 대한 조사와 조림관리가 필요하며 환경적인 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환경과제로는 물관리의 개선, 잔존산림의 보존, 생물다양성의 보호 등이 있다. 북한은 재조림사업과 산림보호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최근의 홍수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53. 대부분의 산림이 보호되고는 있지만 실제 농민들은 산림자원을 여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산악지대의 협동농장에는 국가산림지역과 구별되는 자체산림지역이 있다. 산악지대의 농민과 일부 농촌사람들은 임업부의 허가하에 죽은 나무를 자르고 모아 펄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산림은 또한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밤, 산딸기, 근채류 등을 제공

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것을 모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민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54. 홍수후 산림경사지에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탄광버팀목과 철로괘목의 교체, 제방보강, 집과 건물의 수선 등 홍수관련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약 9만ha(산림면적의 1%이상)의 산림면적이 벌목되었다고 임업부는 보고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벌목이 부족한 외화를 벌기 위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55. 목초지의 개발과 연료 및 석탄부족에 따른 땀감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은 산림완충지대에 문제를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산림 관리에 대한 임업부와 농업위원회의 관리강화와 지도가 요망된다.

#### 다. 농업지원

56. 이 절에서는 비료와 기타 투입물의 배분, 투입물과 장비의 국내생산과 수입문제, 농업생산물과 부산물의 판매, 농촌저축과 금융서비스 제도를 다룬다. 그리고 농업연구와 농민교육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1) 영농자재와 장비의 생산

57. 과거에 북한은 상당부분의 영농자재와 트랙터, 쟁기, 양수기, 기타 농업장비 등의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충족한 적도 있다. 비료산업의 경우 1990년대초까지 대부분의 질소와 인산비료는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성칼리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였고, 살충제와 제초제도 일부 국내에서 제조되기도 하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매우 컸다. 또한 석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질소비료의 생산도 나프타와 경유 등 수입원료에

크게 의존하였다.

58. 북한은 연간 35만톤 정도의 47%짜리 요소분말(granulated urea)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질소비료생산은 1995년 21만 7천톤, 1997년에는 8만 1천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일차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할 외환이 부족한데다 시설이 노후화하고, 기술적으로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59. 현재 비료의 부족은 식량생산 증가에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이다. 북한의 주요 질소비료공장으로는 서부지역의 남흥공장과 동부지역의 흥남공장이 있다. 이 공장들은 외환부족으로 나프타와 경유를 수입못해 거의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남흥공장은 가장 최근에 설립되었는데 원료만 조달되면 즉시 생산의 부분적인 재개가 가능하다. 흥남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인 하나 부품을 교체하면 황산암모늄 생산라인의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 두번째 생산라인은 석탄을 원료로 이용하는데 광산침수로 생산이 어렵다. 북한당국은 두 공장의 가동재개를 위해 국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60. 연료, 윤활유, 그리고 트랙터, 트럭, 펌프의 부품, 특히 트랙터 타이어의 심각한 부족은 곡물생산 조기회복의 두번째 제약요인이다. 지난 4년간 협동농장에서는 연료와 부품부족에 대처하여 노동력 강화, 트랙터의 축력으로의 대체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방법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61.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와 장비의 생산능력을 복구할 수 있는 조기투자가 이루어져 최소한 부품만이라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랙터와 기타 장비의 완전한 생산체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공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된다. 그리고 트랙터와 장비의 설계도면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갱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산업부문 현대화 문제는 이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북한은 트랙터, 양수기, 소형엔진, 농업장비 등의 생산을 위해 해외지 접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 (2) 영농자재 및 장비의 분배

62. 영농자재, 연료, 부품, 장비, 교체품의 생산 및 분배(distribution)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연간작업계획에 따르고 있다. 이 계획에는 모든 국영 및 협동농장, 전국단위의 자재 및 장비공급기관, 무역기관, 농업위원회 관련부서, 그리고 철도와 운송회사 등 국가수송 및 유통기관이 관련된다.
63. 계획수립은 10월에 시작되는데 이때 협동농장은 상부로부터 다음 년도의 연간작업계획(AWP)의 준비를 위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지침'을 받는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개별협동농장의 생산계획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연간작업계획상의 비료, 연료, 기타 투입물의 필요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적으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지침이 작업반과 분조의 노동계획과 계절적으로 필요한 노동력 결정에도 적용된다. 만약 협동농장의 생산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투입필요량과 할당량을 결정하고 그 변동이 크다면 도나 중앙의 기구와도 협의한다.
64. 농업위원회는 정무원 및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총투입물과 장비소요량을 파악하고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여 4개의 소속 무역회사 중 하나의 회사에 수입을 의뢰한다. 공급품은 철도와 트럭으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나 지역저장소에 전달되며 여기서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에 전달된다.

65. 협동농장에서의 투입물 구입은 지역은행의 신용이나 연불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투입물 구입에 따른 모든 미지급채무는 수확시에 직접적으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차감해 위원회나 공급기관에 지불하거나 지역은행의 신용거래를 정리함으로써 청산된다. 요약하면 농업투입물 비용은 충분히 보상된다.
66. 1990년대초 심각한 외환부족이 나타나 비료 및 기타 투입물시장에 접근이 어렵고 예측가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간작업계획 진행은 원만히 작동하지 못하였다.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위원회는 지침을 통해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며 경작과 파종에서 노동집약적 방식을 활용토록 하였다. 전반적인 산업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트랙터, 트럭, 기타 영농장비의 교체가 크게 감소하였다.
67. 영농자재와 장비의 이용감소는 식량공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협동농장의 재정상태도 악화되었다.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농가는 곡물과 기타 작물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였고 이것은 도시시장에 대한 곡물공급의 감소, 그리고 투입물에 대한 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보다 가난한 농촌지역부터 원자재공급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일부농가는 투입물 비용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자체식량필요량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투입공급물에 지불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지역은행은 점차 협동농장에 대한 강제대출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현금이 부족한 협동농장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액을 지불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1995~1996년의 흉수와 1997년의 가뭄은 이러한 원자재공급상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 (3) 협동농장 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의 판매

68. 과거부터 협동농장은 그들이 생산하는 기본작물의 판매와 분배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었다. 목표생산량과 구매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며, 곡물, 채소, 고기는 농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국가배급체계(PDS)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분된다.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본방향이 국가배급체계의 조직화와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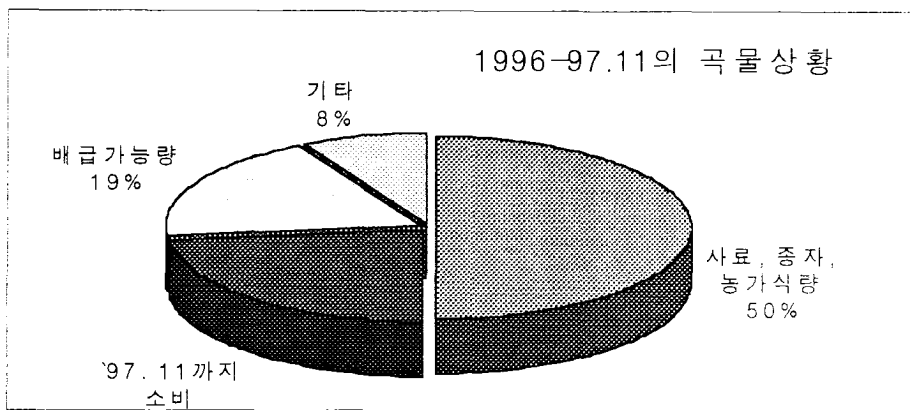
- 국가배급은 일차적으로 도시거주자와 국영농장원에게 지급되며 협동농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조달해야 한다.
- 국가배급망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운영이 자유로운 농민시장이 허용될 수 있다.
- 모든 국가배급품목은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이 적용된다(예로 옥수수의 가격은 모든 지역에서 6전/kg).
- 일일 곡물배급량은 중앙에서 결정하며 그 기준은 유아 300g, 중공업노동자 900g으로 개인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생필품은 상당한 가격보조가 뒤따른다. 예를 들어 국가배급체계는 농민에게서 쌀을 80전/kg에 구입해(37.4cent) 소비자에게는 단지 8전/kg(3.7cent)에 판매한다.

69. 협동농장은 생산된 곡물과 기타 작물 중에서 구성원들 몫으로 합의된 양을 제한한다. 이론상으로는 미리 정해진 할당량을 초과한 몫은 농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구성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식가격으로 국가배급을 위해 정부에 판매한다. 원자재투입비용과 기타 공제액을 정리한 후 농장은 그들에게 남겨진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이 금액은 '노력평가제'에 따라 구성원들간에 배분된다.

70. 협동농장 작업에 의한 현금수입이 보잘것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부업을 한다. 부업생산물은 채소류, 달걀, 닭, 토끼와 염소고기 등이다. 또한 산악지대의 농민들은 약초를 채취, 판매한

다. 부업생산물은 농장원들이 농민시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 식량 위기의 여파로 부업생산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국경 근처에서 빈번히 개설되고 있다.

71. 국가배급체계는 곡물생산의 감소로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식량 부족에 대한 최초의 대책으로는 일일 배급 지급량을 0~14세 그룹은



<그림 8>

500g, 15~64세 그룹은 700g, 65세 이상은 600g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도시주민에게 이러한 배급기준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도 거의 3백만 톤이 필요하다. 협동농장의 자체 소비량을 50% 감축했지만 국내생산량과 국제지원량으로는 이러한 배급량도 유지할 수 없었다.

72. 지난해 동부 3개지역(함남·북, 강원) 협동농장에서는 자체소비량조차 충족시킬 수 없었다. 1996~1997년 수확에서 단지 41.6만톤(19%)만을 배급에 사용할 수 있었다(그림 8 및 부표 0 참조). 1998년 2월에는 지속적인 해외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일 식량배급을 북한당국-FAO-UNDP가 추정하 최소요구량의 45%에 불과한 200g으로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올해 소비가 높아질지의 여부는 추가적인 식량지원과 상업적인 곡물수입에 달려 있다.

#### (4)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

73. 농업부문에 대한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는 중앙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 외에 각 지역에 지점을 운영함으로써 금융부문을 독점하고 있다. 단 유일한 예외로는 위원회소속의 무역회사들이 관리하는 국제무역과 구매활동에 대한 금융서비스인데 이러한 거래는 조선무역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74. 조선중앙은행의 군단위 지점들이 협동농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들의 주요 기능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급 및 판매기관, 기업소, 협동농장간의 자금이체, 부채와 상환에 관한 기록 같은 것들이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지점들의 활동은 상업적 기준에 따르지는 않는다. 협동농장은 은행잔고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이자율의 관리는 상업은행의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농장 및 가계의 생산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는 3.6%이었고, 가계저축에 대한 이자로 단기에금이 3.5%, 정기에금은 4%이었다.

75. 중앙은행의 군단위 지점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시로 협동농장에 대해 연간생산을 위한 대출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없고 제때에 상환이 보장된다. 장기투자계획에 대한 대출은 거의 없다. 따라서 지점관리자는 농업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이나 판매를 위한 대출심사나 관리에 경험이 거의 없다. 최근의 목축진흥프로젝트(Livestock Rehabilitation Project)는 산악지역에 있는 협동농장과 가계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동 프로젝트는 대출업무를 맡게될 중앙은행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76. 과거 가계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긴급자금지원이나 소비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보통 부업생산을 위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계대출은 협동농장의 재무관리자의 승인과 협동농장의 상환보증이 요구된다. 소득창출을 위한 부업생산 목적의 가계대출규정이 최근에 목축진흥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또한 분조원들도 이 프로젝트 하에서 공동차입이 가능하다.

#### (5) 농업연구 및 교육

77. 농업연구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농업과학원(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AAS)에 있다. 또한 일반대학과 기술대학도 제한적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과학원은 산하에 20개 이상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과 목축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또한 농업과학원은 자체의 현장실습장 또는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중 선정된 곳에서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학원 과학기자재의 대부분은 오래되어 일부는 사용할 수 없거나 과다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약도 부족한 형편이다. 저널구독기간도 만료되었다.

78.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은 다양한 품종의 개발을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품종들이 보급예정으로 있다. 예를 들어 과학원은 바이오농약(bio-pesticides)을 개발하였다. 또한 비싼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로도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는 벼품종도 현재 시험중에 있다.

79. 과학원의 응용연구와 현장실험 관리는 교육적 가치의 극대화도 고려하고 있다. 협동농장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직접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농업과학원은 또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관리자와 전문

가, 협동농장 기술자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있다. 훈련은 과학원 시설과 협동농장에서 이루어진다.

80. 제1장에 포함된 정보들은 원탁회의에서 논의될 AREP실행계획을 위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북한의 관련부처,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관(FAO, IFAD, IMF, UNFPA, UNIDO, WFP, UNICEF, UNDP)이 작성한 많은 보고서 등에서 수집되었다. 통계수집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작성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통계의 내부적인 일관성을 점검했고 원격시험방법(remote sensing imagery)에서 얻은 정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 II. 1998-2000 AREP실행계획(Action Plan)

### 가. AREP의 목적

81. 전례 없이 연속적인 홍수와 여타 극도로 악화된 기상조건은 이미 수입 능력의 감소로 비료원료 및 기타 영농자재의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의 농업생산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영농자재의 부족 때문에 곡물생산은 1990년대초에 비해 약 70%가 감소하였다. 식량 부족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연속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82.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1996년 이래의 식량원조는 거의 100만톤에 달하였다. 올해(1998년)만도 식량원조는 총 4억달러에 달하며 총인구의 1/3 정도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상황에서

식량원조는 필요한 것이긴 하나 미봉적 수단이기 때문에 식량부족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할 수 없다. 생산량과 생산성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북한은 수해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곡물생산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료와 기타 영농자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농촌주민을 일터로 복귀시켜야 한다.

83. 이들은 달성가능한 목표이다. 앞장에서 언급되었듯이 북한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필수적인 식량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해왔으며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민들은 필요한 기술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토지와 용수자원도 그런대로 유용하다. 게다가 협동농장과 정부지원기구로 구성되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도 아직까지는 작동되고 있다.

84. 제2장에 요약된 AREP 실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외부의 지원으로 농업부문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공급될 것이다. AREP 실행계획은 다음 3년 안에 달성가능한 두 가지 지원목표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 곡물생산의 회복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한 틀의 강화

#### (1) 식량생산의 회복

85. 정부는 2000/01 농업회계연도까지 곡물소비(정곡기준)를 약 500~600만 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수요목표는 인구증가 및 재설정된 최소곡물재고량을 반영한 것이다. 1993년 센서스에 기초해 볼 때 북한의 총인구는 그 증가율의 둔화(1.3%)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여 2001년 중반까지 2,350만 명에 달할 것이다. 한편 도시화의 속도는 계속 정체되어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62%인 1,430만명, 농촌인구는 38%인 930만명에 이를 것이다.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연간 1인당곡물소비량을 도시주민 139kg, 농촌주민 204kg으로 가정한다면 2001년에 총 식용곡물수요는 390만톤에 달할 것이다(정곡기준). 사료, 종자, 산업용 등의 기타 곡물소비 필요량을 감안하면 총 곡물수요량은 540만톤에 달할 것이다.

86. 이러한 수요계획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999/2000년 양곡연도의 총곡물생산(조곡기준)은 650만톤에 달해야 한다. 수출증가로 수입여력이 확보되고 목표하고 있는 지원패키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이 목표는 달성가능하다. 목표로 설정되는 지원패키지는 다음과 같다.

- 수해를 입은 관개시설 및 기타 인프라의 복구와 현재 진행중인 농지 복구작업의 완료.
- 2개의 국내의 비료공장 재건에 대한 지원과 가축 공급의 확대
- 현재 진행중인 이모작과 같은 집약농업 방식의 확대

## (2) 환경친화적인 식량생산기반의 창조

87. 농업생산기반의 긴급복구와 비료생산 지원은 곡물생산 부족에 단기적으로 대응가능한 비용절감적인 해결책이다.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sustainable)인 곡물생산기반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보완적인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반 노력들은 보다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그 속도도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UN과 NGO가 지원하는 관련단체들은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품종 다양화, 보다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의 도입, 새로운 신용대출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작업이 긴급히 요구되는데 이에겐 환경보호를 위한 주

요과제와 조립녹화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 및 훈련센터를 비롯한 부문별 기관들을 강화하고, 농민시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금융제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 농업관련 조직을 다시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요구된다.

88. 마지막으로 일반경제, 그리고 특히 농업을 위한 재정적 측면의 과제로는 국가의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수출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들이 있다. 비록 정부주도의 실행계획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고 구체적 실행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북한은 1998년과 1999년의 기간동안 여전히 외부로부터 곡물지원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추가로 상업베이스의 수입이 필요한 처지이다. 게다가 정부의 계획은 농기계(트럭, 트랙터 등)의 연료와 관개시설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족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나. AREP의 전략과 수단

89. AREP 실행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상호관련된 수단이 필요하며 이 수단들은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적절한 정책수단이 없을 경우 물리적인 재건 그 자체로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사회안정의 유지와 나아가서 국가가 보유한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에 수반될 수도 있는 역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합 가능한 세가지의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다.

- 생산능력의 재건과 현대화
- 적절한 방향으로의 토지이용도 제고와 수확품종의 다양화
- 농촌의 제도적 기반 강화

## (1) 생산능력의 재건과 현대화

90. 북한정부는 「농업재건을 위한 중기계획」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주로 관개시설 현대화와 간척지개발사업과 같은 보다 장기적인 부문별 투자수요와, 즉각적인 홍수복구라는 단기적 대책이 반영되어 있다. 제출된 중기계획에 따르면 그 초기 사업은 피해지역의 농촌공동체와 협동농장의 복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주요 인프라 재건작업의 병목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병목요인은 다음과 같다.

- 건설중장비의 이용과 고비용의 토목건설이 요구되는 홍수방제시설의 건설
- 이미 수리된 관개망에 대한 관개펌프 및 동력전달시설(송배전설비 등)의 교체

91. 중기계획에 따르면 대략 긴급한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외화비용이 9,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소요부문은 다음과 같다.

- 불도저, 트럭, 에어컴프레서, 발전기 등의 중장비와 토사운반 및 토목사업에 필요한 건설장비
- 관개시설능력 복구에 필요한 관개펌프, 파이프와 전기기기
- 연료, 윤활유, 부품

92. 북한정부-FAO-UNDP팀이 중기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애초에 의도한 것은 관심을 지닌 구호단체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고 실행이 가능한 하위 실천항목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원탁회의 이후에 완료될 것인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술적 측면에서 집중적인 검토 없이도 실

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것에 두어지게 될 것이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영농조건부 식량지원(Food-For-Work assistance) 방식을 적용하는 동시에 다가올 겨울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복잡한 과제들을 다루는 실행계획은 외부로부터의 기술적 지원 하에 경제적, 혹은 공학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복잡한 투자프로젝트는 각 부문별로 폭넓은 연구에 기반하여 전체 농업부문을 종합적으로 포괄해나가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93. 다음으로 중기계획의 다른 구성 항목으로서 비료의 국내생산과 관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중기계획기간 내에 곡물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북한 정부의 계획은 대부분의 복구사업 및 수입에 필요한 자금확보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AREP 지원은 두 개의 비료공장의 재가동을 위한 자금지원을 돕고,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원료를 공급하며, 비료공장이 복구되기 이전까지의 이행기 동안 직접적인 원료투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고자 한다.
94.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계획은 남흥(서해)과 흥남(동해)의 비료공장의 재건과 원료수입에 총 9,300만달러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1천만달러는 남흥비료공장의 즉각적인 수리와 유지에 총당되며, 이 공장의 가동에는 또한 2, 3년에 걸쳐 5천만달러의 원료 및 에너지 수입이 요구된다. 여기에다가 주로 기존의 이용가능한 원재료인 석탄을 사용하는 흥남공장의 재건에는 3,300만달러가 필요하다.
95. 남흥공장의 경우 북한당국의 자금요구는 UN이 최근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추정치와 일치한다. 이 조사는 최대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원료를 모두 수입할 경우 연 4,000만달러의 비용(나프타 2,800만달러, 경유 1,200만달러)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두 개의 생산라인중의 하



나는 초기의 AREP 기간동안 수리중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나프타와 경유의 원료투입에는 연간 2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자금지원 요구에는 UN조사가 설정한 에너지효율화 계획에 소요되는 약 1,200만달러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96. 흥남공장의 경우 UN조사는 주로 노후화한 전기시설을 대체하는 현대화계획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에선 대략 3,3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투자에 실패할 경우 전력비용에 대해 40% 가량의 보조(1MWh당 22달러 대비 12.7달러)가 제공될 때에만 생산에 경제성 있는 것으로 UN조사는 확인하였다. 달리 말해서 흥남공장의 현대화는 주로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기존의 제한된 전력공급의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다.
97. 마지막으로 비료공급능력을 증대함으로써 시급히 요구되는 곡물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계획은 보수적인 동시에 가변적이다.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북한의 생산계획이 기존의 입증된 기술과 농업관련 기관 및 생산당사자에게 아주 익숙한 농업관리방식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복잡한 신기술이나 익숙치 않은 영농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대신 토지생산성 개선과 곡물생산량 증대에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 제약요인은 다름아닌 비료의 적절한 공급이라는 문제이다.
98. 정부의 계획이 가변적이라 한 것은 그것이 단일한 해결방식에 의존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3년간의 실행계획기간 동안의 AREP 지원은 다양하고 가능한 조합(국내생산을 위한 원료의 수입, 가동이 중단된 공장의 재건, 비료의 직접수입)을 통해 비료부족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목 가능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비료공장의 재건이 지체될 경우 곧바로 북한의 질소비료 수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당국

과 FAO·UNDP 팀은 쌀과 옥수수 경작에 필요한 총 비료공급에 연간 약 1억 2,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표 1 참조)

(2)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품종 다양화

99. 과거 북한은 곡물생산에 크게 치중하였고 또 식량자급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농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없었다. 현재 2000년까지의 생산계획은 논농사면적을 58만ha로 계속 유지하고 옥수수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되어있다 (부표 P 참조). 세부적으로 보면 옥수수 재배면적은 1996~97년 60만ha에서 1999~2000년에 48만 8천ha로 줄어들 것이다. 이때 가서 방목지로 전환하거나 옥수수보다는 토지형질에 알맞은 밭작물의 재배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옥수수 재배면적을 감소시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총산출량은 1999~2000년에 27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0. 자연조건상 북위 40도 이상 지역에서는 쌀을 제외한 밭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쌀재배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밭작물로 전환하는 것은 농민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

<표 1> 쌀과 옥수수의 비료수요와 비용(1999~2000년)

구분	소요량 (천톤)	톤당 비용 (미 달러)	총비용 (미 백만달러)
질소 (N Urea)	350.5	150.0	52.6
인 (P DAP)	162.7	250.0	40.7
칼리 (K KCl)	185.7	170.0	32.6
계	698.9		125.9

주 : 질소비료는 또한 황산암모니움에서 얻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질소함량은 47%에서 26%로 낮아져 요구되는 총수요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도 쌀재배의 증가는 북한의 쌀생산을 1996~97년의 160만톤에서 1999~2000년까지 350만톤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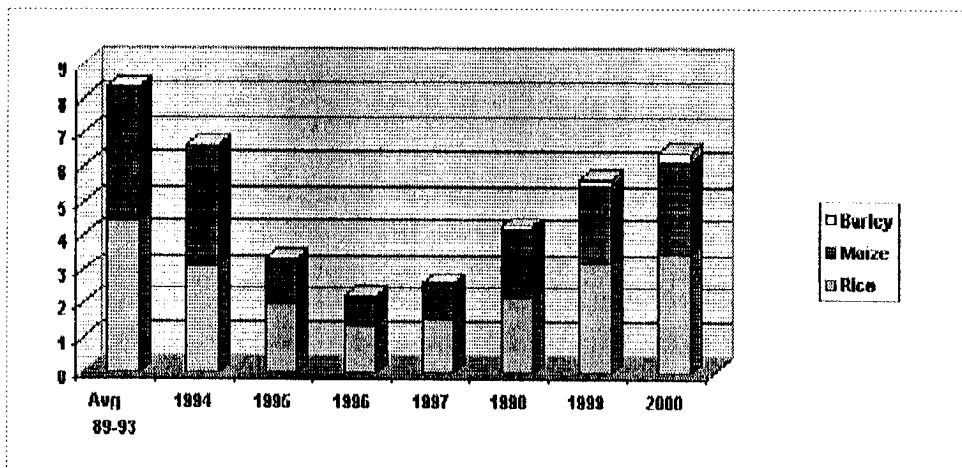
101. 북한당국은 산간지방에서 목축 및 가축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UN의 지원을 받아왔다. 가축생산의 목표는 2000년까지 육류생산을 40만톤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에서는 초지면적을 확대하고 목축동물의 수도 늘어왔다. 위에 언급된 옥수수생산면적의 계획적 감소는 역으로 방목지 개발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표토의 유실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102. 북한은 또한 양잠개발에 대해서도 UN의 지원을 받아왔다. 주로 현재 10만ha에 이르는 뽕나무 재배지의 뽕나무 증식을 통해 다음 3년간 누에 생산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뽕잎의 생산은 궁극적으로 ha당 10톤에 달하여 500kg의 누에가 생산될 것이다.

103. UN이 협력하고 있는 이모작 계획은 1997년에 4만 7,000톤의 보리가 생산됨으로써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이 실험경작을 1997

<그림 9> 2000년까지의 곡물생산

(단위: 백만톤)



년 3만 2,700ha에서 20만ha로 높이려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방안은 국내생산으로 국가전체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개량종자, 농약, 비료를 수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104. 적절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품종다양화 외에도 유기비료의 투입과 통합적인 농약방제 관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영농방법은 북한의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다. AREP는 직접적 환경보호에 대해 초점을 두고 경제림의 조성과 다목적 완충산림의 보다 개선된 관리를 포함하는 삼림 및 수원 관리의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초기의 AREP의 지원은 ①홍수피해지역의 삼림복구, ②경제수종과 외래수종간의 적절한 균형의 연구에 대한 지원에 둘 필요가 있다.

### 2.2.3. 농촌의 제도적 기반 강화

105. AREP자금에 의한 제도구축 지원 (AREP-financed institution- building assistance)은 주로 협동농장을 지원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농촌에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지방의 시장판매망 및 서비스기관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AREP 지원은 가능한 한 지방, 즉 군차원의 수요와 지방의 관련기구들에 초점을 둘 것이다. 중앙차원 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농업부문의 핵심적 기구들간의 협력과 이들 기구로 하여금 협동농장 차원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데에 두어질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지원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농민대출:** AREP기금은 군단위의 은행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될 것이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주로 경영훈련지원 (management training assistance)과 협동농장에 대한 대출증대를 위한 종자돈의 제공과 같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출은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영농방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농민시장의 거래활성화에 쓰여질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미 UN

북축진흥프로젝트에 따라 농촌금융의 개선작업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가 및 농장들에 대출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소액신용(micro-credit)에 대한 UNDP의 지원을 요구한 상태이다.

지방시장 및 유통망: 협동농장과 농가들이 고소득의 작물과 가금 및 소동물의 판매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북한당국과의 사안별 합의에 따라 군단위 지방행정관리들 또는 협동농장들에 제공될 것이며, 특히 지방단위의 시장이나 지역간 거래 혹은 변경무역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협동농장이나 유통조직들도 군단위 신용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은 소형화물차나 지방시장의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타 장비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동농장: AREP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관리자들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신기능을 현대화하도록 농업위원회 주도의 훈련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훈련내용은 주로 농촌금융, 협동조합의 마케팅,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사업의 계획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다.

106. AREP의 자금은 또한 중앙 및 군단위의 농업관련기관들의 활동이 보다 원활히 통합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이용될 것이다. 각 기관간의 협력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각 농업기관 및 협동농장에 대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환기
- 연간계획목표의 설정 단계에서 환경보호의 대상을 선정
- 군단위 행정관리들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민시장을 촉진하고 군차원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데에 참여토록 지원

107. 마지막으로 AREP 기금은 각 부문별 당국으로 하여금 직업개발과 훈

련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서실 현대화 및 전문잡지구독의 갱신을 통해 새로운 직업능력 창출을 제도화하며, 현대적인 훈련장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훈련으로서 공식학 위 부여 과정, 인턴쉽, 해외연수 등이 제공될 수 있다.

<표 2> 자금지원 시기와 규모

(단위: 백만달러)

시기	1998	1999	2000	계
A. 큰물피해복구	30	63	-	93
B. 비료공장				
남 흥	20	20	20	60
흥 남	33	-	-	33
C. 기타				
삼림녹화	1	2	2	5
생산능력	3	4	3	10
집약재배	60	30	9	99
합계	147	119	34	300

#### 다. 소요자금

108.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정부는 '큰물피해복구'(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에 드는 연료, 중장비, 부품의 수입을 위해 9,300만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비료공장의 현대화와 재가동에는 9,300만달러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삼림재녹화를 위해 5백만달러, 생산능력 확대(capacity building)에 1천만달러, 집약재배 사업에 9,900만달러의 대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기부자 혹은 투자자들의 지원기금의 출현시기는 다음 <표 2>와 같다.

## 라. 원탁회의 이후 후속활동

### <관리 및 자금지원 방식>

109. 원탁회의는 북한과 국제사회가 1990년이후의 농업현황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곡물생산 및 생활수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3개년의 AREP 실행계획에 기본인식을 같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원탁회의는 의결에 의한 강제성이 없으며 기부자나 투자자들은 실행계획에서 제안된 특정한 내용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원탁회의 이후 즉각 검토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UN의 지원 하에 1)AREP를 위한 자원마련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2) 추가적으로 보다 장기적인 운영문제에 초점을 둔 광범위한 부문별 연구를 수행하여 어업 및 수산업을 포함한 추가적인 부문별 세부활동으로 확대할 것이다.

110. AREP 실행을 위한 자원마련은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 기부자들은 예를 들어 NGO 등의 활동에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며, UN기구들 특히 UNDP와 주변국가와의 통상적인 비용분담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UNDP의 북한신탁기금(UNDP Trust Fund for DPRK) 활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신탁기금은 1996년 설립된 대북 농업지원 및 복구(이모작 포함)를 위한 긴급자금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기금은 또한 넓은 범위의 농업회복 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이다. 신탁기금 구조하에서 기부자들은 특정프로젝트나 활동에 자금을 기탁하고 보고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행계획은 북한 정부부처 대표(장관급)와 UNDP상주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 의해 운영되고 조정될 것이다. 기부자들과 실행당국은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에 선임될 수 있다.

〈부표 A〉 월별 강우량(1995~97)

(단위 : mm)

지역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4~9월 합계
	연도							
합흥 (함경남도)	평균(1931-90)	50	61	92	238	245	107	792
	1995	24	101	126	417	661	107	1,436
	1996	50	84	255	759	206	84	1,438
	1997	6	132	29	13	214	53	447
원산 (강원도)	평균(1931-90)	69	82	136	305	334	203	1,129
	1995	32	71	189	483	854	109	1,738
	1996	58	75	530	789	227	80	1,759
	1997	25	276	25	12	261	345	944
평양	평균(1931-90)	53	63	91	282	248	109	845
	1995	24	127	146	484	868	168	1,817
	1996	34	68	228	701	91	104	1,226
	1997	22	45	207	120	195	40	629
사리원 (황해북도)	평균(1931-90)	51	58	90	261	240	97	796
	1995	29	135	138	346	708	162	1,518
	1996	60	72	244	919	135	10	1,440
	1997	9	154	30	40	236	125	594
신의주 (평안북도)	평균(1931-90)	51	72	106	304	269	109	910
	1995	51	199	198	614	671	163	1,896
	1996	40	74	279	704	292	158	1,547
	1997	32	142	25	170	-	-	369
강계 (자강도)	평균(1931-90)	53	77	123	241	221	88	804
	1995	67	140	241	321	451	39	1,259
	1996	25	80	176	496	229	158	1,164
	1997	6	90	40	110	135	59	440
개성	평균(1931-90)	81	89	124	393	303	131	1,121
	1995	24	82	112	421	650	107	1,396
	1996	52	50	259	722	109	9	1,201
	1997	31	286	70	150	155	40	733

자료: 북한



<부표 B> 도별,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1997년)

(단위: 천ha)

도/시	경지			산림			기타 <sup>2)</sup>	총계
	쌀 및 옥수수	만작물 <sup>1)</sup>	소계	조림	자연림	소계		
함경북도	82	69	151	167	1,046	1,213	393	1,757
함경남도	113	85	198	207	1,076	1,283	416	1,897
강원도	78	51	129	103	619	723	263	1,115
동부지역	273	205	478	477	2,741	3,219	1,073	4,769
전국대비 비중			26%			43%	37%	39%
평안북도	210	86	296	90	565	656	267	1,219
평안남도	170	65	235	90	575	665	258	1,158
남포시	25	9	34	3	17	20	21	75
황해북도	135	59	194	90	309	400	207	801
황해남도	255	86	341	81	150	231	228	800
서부지역	795	305	1,100	355	1,617	1,972	981	4,053
전국대비 비중			59%			26%	34%	33%
양강도	12	72	84	141	984	1,125	223	1,432
자강도	47	37	84	208	859	1,067	546	1,697
평양시	42	32	74	7	93	100	26	200
개성시	15	18	33	20	33	53	40	126
내륙지역	116	159	275	377	1,969	2,346	834	3,455
전국대비 비중			15%			31%	29%	28%
북한 전국	1,184	669	1,853	1,209	6,328	7,536	2,888	12,277
총면적의 비중			15%			61%	24%	100%

주 : 1) 야채, 과일, 기타 작물(밀, 보리, 감자, 감자, 수수, 콩)

2) 방목지 및 초지 포함

자료: 북한

〈부표 C〉 1995년 홍수피해 경지면적과 피해량

도/시	피해 경지면적 (천ha)				총경지 면적 (천ha)	피해 면적 비중 (%)	피해량 (천톤)		
	침수	유실	퇴적	계			쌀	옥수수	기타
함경북도	7.7		0.1	7.8	151.0	5%	9.4	26.6	
함경남도	1.9	0.2		2.1	198.0	1%	0.1	5.2	
강원도	59.4	2.2	7.3	68.9	129.0	53%	147.2	125.1	
동부지역	69.0	2.4	7.4	78.8	478.0	16%	156.7	156.9	
평안북도	130.8	0.5	0.2	131.5	260.0	51%	545.3	311.8	
평안남도	34.7	2.6	4.3	41.6	235.0	18%	108.3	79.8	
남포시					34.0				
황해북도	43.8	1.8	3.3	48.9	194.0	25%	141.5	137.0	
황해남도	20.3	0.1	0.2	20.6	341.0	6%	64.1	19.5	
서부지역	229.6	5.0	8.0	242.6	1,064.0	23%	859.2	548.1	
양강도	1.6	0.1	0.0	1.7	84.0	2%	0.1	6.2	
자강도	10.4	2.3	1.2	13.9	84.0	17%	9.2	3.8	
평양시					74.0				
개성시					33.0				
내륙지역	12.0	2.4	1.2	15.6	275.0	6%	9.3	10.0	
상기 합계	310.6	9.7	16.6	336.9	1,817.0	19%	1,025.2	715.0	
구분불가	20.4	1.0	1.6	23.0	36.0		57.8	97.0	
전 국	331.0	10.7	18.2	359.9	1,853.0	19%	1,083.0	812.0	
비 중	92%	3%	5%	100%					

자료: 북한, 큰물피해복구위원회(FDRC: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부표 D〉 1996년 홍수피해 경지면적과 피해량

도/시	피해 경지면적 (천ha)				총경지 면적 (천ha)	피해 면적 비중 (%)	피해량 (천톤)		
	침수	유실	되시	계			쌀	옥수수	가타
함경북도	-	-	-	-	151.0	-	-	-	
함경남도	-	-	-	-	198.0	-	-	-	
강원도	16.9	2.3	3.0	22.1	129.0	17%	20.2	43.3	
동부지역	16.9	2.3	3.0	22.1	478.0		20.2	43.3	
평안북도	66.7	0.9	1.7	69.3	260.0	23%	157.7	102.8	
평안남도	47.2	-	1.1	48.2	235.0	21%	175.1	236.6	
남포시	19.9	-	-	19.9	34.0	59%	147.5	-	
황해북도	38.0	3.4	4.5	45.9	194.0	24%	-	69.8	
황해남도	64.9	2.3	2.9	70.1	341.0	21%	266.5	54.7	
서부지역	236.7	6.6	10.2	253.5	1,100.0	23%	746.8	463.9	
양강도	-	-	-	-	84.0	-	-	-	
자강도	0.0	0.0	-	0.0	84.0	0%	-	-	
평양시	5.4	0.0	-	5.4	74.0	-	-	-	
개성시	14.0	0.7	1.8	16.6	33.0	50%	30.4	26.0	
내륙지역	19.4	0.8	1.8	22.1	275.0		30.4	26.0	
전 국	273.1	9.7	15.0	297.7	1,853.0	16%	797.4	533.2	
비 중	92%	3%	5%	100%					

자료: 북한, 큰물피해복구위원회(FDRC: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부표 E〉 성별, 지역별 인구 (1993년도)

도/시	총인구			지역 비중 (%)	성비 (F/M)	면적 (천km <sup>2</sup> )	인구밀도 (명/km <sup>2</sup> )	도시	농촌	농촌 인구 비율 (%)
	여성	남성	(천명)					인구	인구	
함경북도	1,085	976	2,061		111%	17.57	117	1,483	578	
함경남도	1,451	1,281	2,732		113%	18.97	144	1,659	1,074	
강원도	696	609	1,305		114%	11.15	117	611	694	
동부지역	3,232	2,866	6,098	29%	113%	47.69	128	3,753	2,346	29%
평안북도	1,289	1,148	2,437		112%	12.19	200	1,322	1,115	
평안남도	1,509	1,358	2,867		111%	11.58	248	1,775	1,091	
남포시	384	347	731		111%	0.75	975	566	165	
황해북도	805	707	1,512		114%	8.01	189	659	853	
황해남도	1,068	943	2,011		113%	8	251	687	1,324	
서부지역	5,055	4,503	9,558	45%	112%	40.53	236	5,009	4,548	57%
양강도	335	303	638		111%	14.32	45	460	178	
자강도	605	547	1,152		111%	16.97	68	753	399	
평양시	1,439	1,303	2,742		110%	2	1,371	2,355	386	
개성시	179	156	335		115%	1.26	266	171	163	
내륙지역	2,558	2,309	4,867	23%	111%	34.55	141	3,739	1,126	14%
합 계	10,845	9,678	20,523	97%	112%	122.77	167	12,501	8,020	100%
구분불가	39	652	691	3%	6%	0		N.a.	N.a.	
전 국	10,884	10,330	21,214	100%	105%	122.77	173			
(비 중)	51%	49%	100%					61%	39%	

자료: 북한 중앙통계국 1993년도 인구센서스

〈부표 F〉 중국의 1인당 곡물소비

(단위: kg)

연도	도시		농촌		인구비율		가중평균	
	상곡기준	조곡기준	정곡기준	조곡기준	도시	농촌	정곡기준	조곡기준
1981	145	217	178	256	17%	83%	172	249
1982	145	216	192	260	17%	83%	184	253
1983	144	216	197	267	18%	82%	187	258
1984	142	212	209	257	19%	81%	196	248
1985	135	201	209	259	20%	80%	194	247
1986	138	206	212	259	20%	80%	197	248
1987	134	200	211	259	20%	80%	196	247
1988	137	205	211	260	20%	80%	196	249
1989	134	201	213	262	21%	79%	196	249
평균 1981-89	139	208	204	260			191	250
북한 (1993년)	139	208	204	260	60.5%	39.5%	165	229
북한 (2000년)	139	208	204	260	61.5%	38.5%	164	228

주 : 중국에서 곡물은 밀, 쌀, 옥수수, 콩, 수수, 귀리, 보리, 기장과 그밖에 땅콩, 완두콩 등의 콩류, 그리고 메밀과 감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곡물소비는 거래되는 곡물, 즉 '商穀'(trade grain)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에서 쌀은 精米로 포함된다. 반면 '精穀'(fine grain)은 주로 쌀과 밀이 포함된다. 또한 곡물소비 통계에는 도정과정의 곡물손실(grain losses), 폐기 및 낭비(wastage), 공업용 소비(industrial use)가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곡물은 쌀, 옥수수, 기타 곡물(cereals)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메밀과 감자는 제외하였다.

〈부표 G〉 1990년이후의 인간개발지수(HDI)

연도	1인당 GDP (달러, PPP)	기대 수명 (연)	성인 문자해독율 (%)	종합 진학률 (%)	수명 지수	교육 지수	GDP 지수	HDI	순위
1990	2,000	70.0	90%					0.789	82위 / 130
1991	2,000	70.4	90%					0.665	74위 / 160
1992	2,172	70.4	96%					0.654	75위 / 160
1993	2,000	70.4	95%					0.640	91위 / 173
1994	1,750	70.7	95%					0.609	101위 / 173
1995	3,026	71.1	95%	75%	0.77	0.88	0.55	0.733	83위 / 174
1996	3,000	71.2	95%	75%	0.77	0.88	0.49	0.714	83위 / 174
1997	3,965	71.4	95%	75%	0.77	0.88	0.64	0.765	75위 / 175

주 : 1) 인간개발지수(HDI)는 수명지수(longivity), 교육지수( educational attainment), 생활수준지수(standard of living) 등의 세가지 지표에 근거한다. 수명지수는 평균수명으로 추정되며, 교육지수는 성인문자해독율(가중치 2/3)과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진학률을 종합한 종합진학률(가중치 1/3)로, 그리고 생활수준지수는 구매력평가에 의한 1인당 GDP로 계산됨.

2) 최근 들어 인간개발지수는 더욱 정교해져 성(gender)과 소득불균형 정도를 반영하고 있음.

3) 국제비교통계는 일반적으로 3년의 시차(예를 들어 1997년 발간물은 1994년 데이터를 수록)를 지니는 가용한 완전한 데이터군이 있어야 함.

4) UNDP의 북한 데이터는 이 연구를 반영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음. 단 순위는 같을 수 있음.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1990~1997, 연도별 발행)

〈부표 H〉 노동력과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연령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여성취업률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15	158	166	324	-	-	-	-
16-19	662	543	1,205	439	340	779	66%
20-24	1,098	765	1,863	1,017	695	1,712	93%
25-29	1,032	987	2,020	896	878	1,774	87%
30-34	817	791	1,608	711	759	1,469	87%
35-39	703	683	1,386	629	673	1,302	89%
40-44	508	482	991	463	477	940	91%
45-49	640	603	1,243	583	595	1,178	91%
50-54	626	583	1,209	561	570	1,131	90%
55-59	576	487	1,064	94	467	561	16%
60 <sup>1)</sup>	108	78	186	51	108	159	-
국제기준 적용시 <sup>2)</sup>	6,928	6,169	12,773				
북한기준 <sup>3)</sup> (실제 경제활동인구)	6,086	5,925	12,011	5,443	5,562	11,005	-
				89%	94%	92%	

주 : 1) 60세 이상

2) 노동가능인구(Labor Force)는 일반적으로 15~60세의 모든 인구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됨

3) 북한에서는 노동가능인구를 여성은 16~54세로, 남성은 16~59세로 잡음. 그리고 이 표의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가능인구로는 학생 73만 6천명의 학생(여학생 29만 3천명), 장애인 5만 8천명, 미취업 전업주부 46만 5천명 등이 있음. 실제 경제활동인구비율은 이러한 인구를 제외한 것임.

자료: 북한 중앙통계국, 1993년도 인구센서스 자료.

〈부표 1〉 경제부문별 취업인구

(단위: 천명, %)

	여성	남성	계	비중	성비(여/남)
제조업 및 건설업	2,309	2,274	4,583	42%	102%
농업	1,664	1,718	3,382	31%	97%
서비스 및 기타	1,470	1,570	3,040	28%	94%
(교육, 문화, 보건)	504	339	844		149%
(상업, 의료)	348	161	509		216%
(수송, 통신)	117	285	402		41%
(토지 및 도시관리)	98	153	251		64%
(기타)	403	631	1,035		64%
합계	5,443	5,562	11,005	100%	98%

자료: 북한 중앙통계국, 1993년 인구센서스 자료

〈부표 2〉 협동농장 농민 수

(단위: 천명, %)

나이	여성	남성	계	비중	성비(여/남)
15	115	85	200	8%	135%
20-24	241	173	414	16%	139%
25-29	251	230	481	19%	109%
30-34	177	171	348	13%	104%
35-39	131	130	261	10%	101%
40-44	109	101	210	8%	108%
45-49	120	117	237	9%	103%
50-54	113	114	227	9%	99%
55-59	54	104	158	6%	52%
60세 이상	27	27	54	2%	100%
총계	1,338	1,252	2,590	100%	107%

자료: 북한 중앙통계국, 1993년도 인구센서스 자료



〈부표 K〉 국내총생산(GDP) 1992~1996년

(단위: 미 백만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업	4,551	4,689	3,223	2,228	1,556	1,867	2,922	3,804	4,276
제조업 및 건설업	9,122	9,483	7,341	6,042	5,283				
서비스 및 기타	7,160	6,762	4,858	4,532	3,748				
GDP	20,833	20,934	15,422	12,802	10,587				
인구 (백만명)	20.73	21.06	21.38	21.70	22.02	22.35	22.64	22.94	23.24
1인당GDP (달러)	1,005	994	721	590	481				

< 비 중 >

농업	22%	22%	21%	17%	15%				
제조업 및 건설업	44%	45%	48%	47%	50%				
서비스 및 기타	34%	32%	32%	35%	35%				
GDP	100%	100%	100%	100%	100%				

< 연 증가율 >

농업		3.0%	-31.3%	-30.9%	-30.2%	20%	57%	30%	12%
제조업 및 건설업		4.0%	-22.6%	-17.7%	-12.6%				
서비스 및 기타		-5.6%	-28.2%	-6.7%	-17.3%				
GDP		0.5%	-26.3%	-17.0%	-17.3%				
인구		1.6%	1.5%	1.5%	1.5%	1.5%	1.3%	1.3%	1.3%
1인당 GDP		-1.1%	-27.4%	-18.2%	-18.5%				

〈부표 L〉 토지등급별 쌀과 옥수수의 최적생산

	쌀			옥수수		
	면적 (천ha)	ha당 생산 (톤/ha)	생산 (백만톤)	면적 (천ha)	ha당 생산 (톤/ha)	생산 (백만톤)
1등급 (우수)	195	7.5	1.46	204	7.5	1.53
2등급 (양호)	385	6.5	2.50	179	6.5	1.16
3등급 (불량)	7	4.0	0.03	243	4.0	0.97
합 계	587	6.8	3.99	626	5.9	3.67

자료: 농업위원회(1997.3)

〈부표 M〉 지역별 쌀 생산

(단위: 백만톤)

지역	1989	1990	1991	1992	1993	'89-'93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실제 생산량										추정치	UNDP계획치	
함경북도	0.13	0.11	0.13	0.17	0.05	0.12	0.06	0.09	0.05	0.07			
함경남도	0.40	0.44	0.44	0.49	0.29	0.41	0.30	0.21	0.14	0.10			
강원도	0.18	0.18	0.19	0.18	0.15	0.18	0.13	0.09	0.06	0.05			
동부지역	0.70	0.73	0.76	0.84	0.49	0.71	0.49	0.38	0.25	0.22			
평안북도	0.62	0.79	0.64	0.68	0.83	0.71	0.60	0.25	0.20	0.13			
평안남도	0.93	0.89	0.74	0.79	1.03	0.88	0.79	0.39	0.24	0.27			
남포시	0.12	0.12	0.12	0.10	0.15	0.12	0.11	0.07	0.06	0.08			
황해북도	0.33	0.41	0.33	0.37	0.43	0.37	0.12	0.15	0.11	0.19			
황해남도	1.23	1.16	1.09	1.25	1.36	1.22	0.77	0.55	0.38	0.48			
서부지역			2.92	3.19	3.80	3.30	2.39	1.41	0.99	1.15			
양강도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1			
자강도	0.03	0.01	0.03	0.04	0.04	0.03	0.03	0.02	0.02	0.02			
평양시	0.27	0.26	0.29	0.27	0.30	0.28	0.20	0.14	0.11	0.13			
개성시	0.08	0.10	0.08	0.10	0.11	0.09	0.01	0.04	0.03	0.04			
내륙지역	0.39	0.38	0.41	0.41	0.45	0.41	0.24	0.21	0.17	0.20			
전국합계	4.32	4.48	4.09	4.45	4.75	4.42	3.11	2.00	1.41	1.57			
연양인구 (백만명)	19.77	20.08	20.40	20.73	21.06	20.40	21.38	21.70	22.03	22.36	22.65	22.94	23.24
쌀기준전환 생산량 (백만톤)	3.24	3.36	3.07	3.34	3.56	3.31	2.18	1.40	0.98	1.10			
1인당 생산	연간 (kg)	164	167	150	161	169	162	102	64	45	49		
	1일 (g)	449	458	412	441	463	445	279	176	122	135		

자료: 북한 농업위원회 자료; UNDP/FDRC 추계자료

〈부표 N〉 지역별 옥수수 생산

(단위: 백만톤)

지역	1989	1990	1991	1992	1993	'89-'93 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실제 생산량									추정치	UNDP계획치			
함경북도	0.36	0.38	0.21	0.26	0.17	0.28	0.19	0.13	0.09	0.04				
함경남도	0.46	0.47	0.50	0.40	0.28	0.42	0.41	0.15	0.09	0.01				
강원도	0.24	0.13	0.20	0.15	0.16	0.18	0.19	0.09	0.02	0.02				
동부지역	1.06	0.98	0.91	0.81	0.61	0.87	0.79	0.37	0.20	0.07				
평안북도	0.64	0.65	0.70	0.69	0.73	0.68	0.53	0.11	0.10	0.22				
평안남도	0.62	0.57	0.56	0.52	0.56	0.57	0.55	0.15	0.10	0.15				
남포시	0.07	0.08	0.08	0.10	0.08	0.08	0.07	0.04	0.03	0.01				
황해북도	0.50	0.43	0.54	0.41	0.44	0.46	0.37	0.14	0.08	0.05				
황해남도	0.82	0.58	0.71	0.60	0.75	0.69	0.62	0.29	0.11	0.30				
서부지역	2.65	2.31	2.59	2.32	2.56	2.49	2.14	0.73	0.42	0.73				
양강도	0.03	0.02	0.02	0.02	0.03	0.02	0.03	0.01	0.01	0.01				
자강도	0.18	0.17	0.20	0.15	0.15	0.17	0.19	0.06	0.06	0.07				
평양시	0.17	0.18	0.20	0.19	0.25	0.20	0.12	0.07	0.05	0.03				
개성시	0.07	0.04	0.06	0.05	0.05	0.05	0.05	0.03	0.01	0.01				
내륙지역	0.45	0.41	0.48	0.41	0.48	0.45	0.39	0.17	0.13	0.12				
전국 합계	4.34	3.90	4.20	3.72	3.94	3.94	3.55	1.37	0.83	1.01	2.07	2.30	2.68	
연앙인구 (백만명)	19.77	20.08	20.40	20.73	21.06	20.40	21.36	21.66	21.97	22.28	22.60	22.92	23.24	
1인당 생산	1일 (g)	602	532	564	491	512	529	455	173	103	125	251	275	316
	연간 (kg)	220	194	206	179	187	193	166	63	38	46	92	100	115

자료: 북한 농업위원회 자료; UNDP/FDRC 추계자료

〈부표 0〉 1998년 3월 1일 현재 식량사정

(단위: 천 M/T)

지역	'96-'97 생산량 추정치	10월까지 의 소비	사료, 종자, 농가소비	기타 소비	배급 가능량	'97.11-'98.2의 식량공급량		'98.3 현재 식량 보유량
						국내 생산분	해외 원조	
함경북도	103.1	24.0	79.6	10.3	-10.8	43.6	24.5	-54.4
함경남도	101.5	23.6	149.3	11.9	-83.3	44.2	16.5	-127.5
강원도	61.1	14.2	77.7	11.1	-41.9	18.3	33.6	-60.2
동부지역	265.7	61.8	306.6	33.3	-136.0	106.1	74.6	-242.1
평안북도	299.5	69.7	151.1	15.8	62.9	33	41.6	29.9
평안남도	326.0	75.9	136.0	24.0	90.1	48.7	28.1	41.4
남포시	79.2	18.5	22.1	11.3	27.3	14.8	7.6	12.5
황해북도	205.5	47.8	111.5	25.6	20.6	24	13.5	-3.4
황해남도	646.1	150.4	188.0	32.9	274.8	33.4	7.6	241.4
서부지역	1,556.3	362.3	608.7	109.6	475.7	153.9	98.4	321.8
양강도	65.2	15.2	35.7	7.4	6.9	17	5.0	-10.1
자강도	85.0	19.8	52.6	4.1	8.5	30.3	5.1	-21.8
평양시	131.2	30.5	42.5	5.8	52.4	90.1	6.5	-37.7
개성시	44.6	10.4	20.9	4.8	8.5	6.6	1.5	1.9
내륙지역	326.0	75.9	151.7	22.1	76.3	144.0	18.1	-67.7
북한전국	2,148.0	500.0	1,067.0	165.0	416.0	404.0	191.1	12.0
(비중)		23%	50%	8%	19%			

자료: 북한

〈부표 P〉 1998~2000년의 곡물(Cereal) 수급 (양곡연도 기준)

	97-98	98-99	99-00	00-01	비 고
A. 주민수요	3.73	3.78	3.83	3.87	도시(A-1) + 농촌 (A-2)
A-1. 농촌주민 (백만톤)	1.84	1.85	1.87	1.89	농촌인구 X 1인당 소비
농촌인구 (백만명)	9.00	9.09	9.18	9.27	'93년 860만명에서 매년 1%씩 증가
1인당소비 (kg)	204	204	204	204	1981-89년 중국인 평균
연간 쌀소비 (kg/연)	137	137	137	137	중국인 평균 - 옥수수 소비
연간 옥수수소비 (kg/연)	67	67	67	67	FAO/WFP 가정
A-2. 도시주민 (백만톤)	1.90	1.92	1.95	1.98	도시인구 X 1인당 소비
도시인구 (백만명)	13.64	13.85	14.06	14.27	총인구 - 농촌인구
1인당 소비(kg)	139	139	139	139	1981-89년 중국인 평균
연간 쌀 소비 (kg/연)	72	72	72	72	중국인 평균 - 옥수수 소비
연간 옥수수 소비 (kg/연)	67	67	67	67	FAO/WFP 가정
B. 사료, 종자 수요	0.30	0.70	1.00	1.10	사료는 증가, 종자는 감소
C. 기 타	0.10	0.20	0.30	0.40	공업용 수요 포함
총 수요 (A+B+C)	4.13	4.68	5.13	5.37	
= 총 공급 (D+E)					
D. 국내생산	2.16	3.67	4.79	5.59	전년도의 생산분
D-1. 쌀 생산 (백만톤)	1.10	1.50	2.30	2.61	재배면적 X 단위당 수확
쌀 재배면적 (천ha)	585	580	580	580	3등급 토양 배제(5천ha 배제)
ha당 정곡 생산 (톤/ha)	1.88	2.59	3.96	4.50	조곡생산량 X 도정율
ha당 조곡 생산 (톤/ha)	2.68	3.70	5.50	6.00	토지비옥도에 의존
D-2. 옥수수 생산 (백만톤)	1.01	2.07	2.29	2.68	재배면적 X 단위당 수확
옥수수 재배면적 (천ha)	599	590	536	488	상당한 감소, 3등급 토양 배제
옥수수 생산량 (톤/ha)	1.69	3.50	4.27	5.50	비료사용량에 의존
D-3. 이모작 및 간작	0.05	0.10	0.20	0.30	보리, 밀 등
E. 수입 (백만톤)	1.97	1.01	0.34	-0.22	총수요 - 국내생산
E.1 상용수입 (백만톤)	1.00	0.50	0.50	0.00	현재의 수출액을 증대해야 함
E.2- 해외원조 (백만톤)	0.97	0.51	-0.16	-0.22	나머지 E-E1(-는 재고증가를 의미)
총인구(백만명)	22.64	22.94	23.24	23.54	'98년 부터는 증가율 1.3%
침 쌀 식량수요 (백만톤)	2.22	2.24	2.27	2.30	도시 및 농촌
고 1인당 쌀수요 (kg/연)	97.8	97.8	97.7	97.6	도시화에 의한 수요감소
통 조곡생산 (백만톤)	1.57	2.15	3.19	3.48	재배면적 X 단위당 수확
저 조곡 및 옥수수생산(백만톤)	2.58	4.21	5.48	6.16	유지가능 경작한계는 연6백만톤
도정율(정곡/조곡)	70%	70%	72%	75%	부품(spare parts)이 필요

〈부표 Q〉 AREP의 자금소요 추정(1998~2000년)

(단위: 백만달러)

	국내자금	해외자금	총비용	비고
1. 인프라제건 및 토양복구 <sup>1)</sup>	1,392	93	1,485	
1.1. 토양 복구	236	24	260	
1.2. 관개 시스템	1,120	31	1,152	정부가 요청하는 연료, 중 장비, 용수펌프만 포함
1.3. 기타 인프라 (방파제, 하천제방 등)	36	38	73	
2. 무기화학비료 생산 <sup>2)</sup>	0	93	93	현재 지출된 5천만달러의 자본투자 포함
2.1. 홍남공장	0	33	33	
2.2. 남흥공장	0	60	60	
3. 기 타 <sup>3)</sup>	현물	114	114	
3.1. 집약재배 증대	현물	99	99	2000-01년까지 이모작확대
3.2. 조립사업	현물	5	5	
3.3. 생산능력 확대	0	10	10	
합            계		300	1,692	

주 : 1) 연간 약 2억달러에 달하는 FFW 제외

2) 필요한 비료를 수입할 경우 연간 약 1억 2,500만달러 소요

3) 현물공여는 아직 추계되지 않음.

북한의 헌법개정과  
향후 경제정책 변화전망

발행일 : 1998. 12. 30

발행처 : 통일부 정보분석실

인쇄처 : 웃 고 문 화 사



